

# 힐스테이트 창원 더퍼스트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e모델하우스([http://www.hillstate.co.kr/s/#changwon\\_thefirst](http://www.hillstate.co.kr/s/#changwon_thefirst)) 및 사전예약제 운영안내
  - [힐스테이트 창원 더퍼스트] 견본주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e모델하우스([http://www.hillstate.co.kr/s/#changwon\\_thefirst](http://www.hillstate.co.kr/s/#changwon_thefirst)) 및 **사전예약 관람**을 병행 운영함.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힐스테이트 창원 더퍼스트]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분양 홈페이지([http://www.hillstate.co.kr/s/#changwon\\_thefirst](http://www.hillstate.co.kr/s/#changwon_thefirst))를 통해 분양일정안내,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 견본주택 방문 사전예약제 안내
  - 본 아파트는 일일 방문객수와 시간별 방문객수를 한정하여 홈페이지를 통하여 방문일과 시간을 예약하신 분들만 예약된 일자와 시간에 견본주택 방문이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안내 사항
  - 견본주택은 코로나 지역사회 확산 정도에 따라 예약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라 폐쇄 될 수 있음.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방문가능 기간,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 발표일 이후 검수 기간 내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의 견본주택 관람은 개별 안내 예정.
  - 견본주택 예약방문시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외 동반자 1인(영유아 포함)까지 가능함.
  - **견본주택 방문기간 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이 제한됨.**
    - 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자, 의심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입국자
    - 다.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입장 후에도 마스크 미착용시 관람이 제한됨)
    - 라. 견본주택 입장 전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전신소독기를 통한 전신소독, 방역록 작성 및 신분 확인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마.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바. 발열 및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있을 경우
    - 사. 기타 견본주택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전신소독기 등)
  - 2020.10.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및 불응 시 등 법률 제80조 제7호 및 제83조 제4항에 의거하여 조치됨.
- 본 아파트는 안심 견본주택 운영으로 인한 관람 인원 제한 등으로 보다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 055-267-1779)를 운영할 계획이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 상담 신청으로 인하여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람.
- 전화 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해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된 전화 상담은 청약 신청 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는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본 아파트는 2021.11.1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됨.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4.08.임.(청약자격조건외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해당 주택건설지역(창원시 성산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되므로(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만 1순위 청약 가능) 사전에 정확한 자격 및 조건을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기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함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당첨된 주택의 구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
| 분양기상한제 적용주택(제1항 제3호)           | 10년간         |

\* '20.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참고바람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08.) 현재 창원시 거주자 및 전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1순위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주로 한정)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한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창원시 1년 이상 거주자(2021.04.08.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함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함.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됨.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음.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함.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함.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함.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음.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됨.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 장모, 시부, 시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분양가족으로 보지 않음. 분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됨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 하시기 바람.(기타 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신고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함.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람.

| 신청자격       | 특별공급  |   |   |   |   | 일반공급  |             |
|------------|---|---|---|---|---|---|-------------|
|            | 기관추천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1순위   | 2순위         |
| 청약통장       | 필요<br>(6개월 이상, 예치금)<br>※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br>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br>불필요 | 필요<br>(6개월 이상, 예치금)<br>※ 지역별 / 면적별<br>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br>(6개월 이상, 예치금)<br>※ 지역별 / 면적별<br>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br>(1순위 24개월 이상 예치금)<br>※ 지역별 / 면적별<br>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br>(1순위 24개월 이상 예치금)<br>※ 지역별 / 면적별<br>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br>(1순위 24개월 이상 예치금)<br>※ 지역별 / 면적별<br>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br>(2순위) |
| 세대주 요건     | -   | -   | -   | 필요  | 필요  | 필요  |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   | 적용  | -   | 적용  | -   |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 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함.

| 청약신청 구분                                       |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YESKEY) | 네이버인증서 | KB모바일인증서 |
|---|----------------|---------------|--------|----------|
|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 ○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 재공급                       | ○              | ○             | X      | X        |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관련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함.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됨.(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됨.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해야 함.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해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해야 함.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함.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illstate.co.kr/s/#changwon\\_thefirst](http://www.hillstate.co.kr/s/#changwon_thefirst))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함.**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태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함.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멸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함.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외국인 포함)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함.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함.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음.

|        |  |
|--------|--|
| 전매제한기간 |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2.04.27.)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금지<br>(다만, 그 기간[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으로 인정) |
|--------|--|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

■ 분양권 전매 제한 및 재당첨 제한기간

- 재당첨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며, 기존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기간내에 있는 자는 본 아파트의 청약이 불가함.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통장은 계약여부에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함)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제6호, 같은 항 제7호 가목(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함) 및 같은 항 제8호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 재건축 주택에 대하여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지역(직장 포함)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1순위 자격제한이 적용되오니 유의 바람.(단,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입주권을 획득한 자는 제외)

2020.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재당첨제한을 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 **당첨일로부터 10년** ②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당첨일로부터 7년**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다만 「주택법」 제101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음.

- 불법 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됨.

-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됨.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제출하는 서류 중 제2항 제2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과거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 2항 제7호의 출입국사실증명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함.

■ 대출제한 안내

- 창원시 성산구는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 되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등 대출제한이 적용됨. 본 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은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가능 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 무주택세대 : LTV(50%), DTI(50%) / 1주택(분양권·입주권포함) 보유 세대는 원칙적으로 금지(6개월내 전입 및 기존주택 처분 조건 등 예외 허용 사유 LTV(50%), DTI(50%)) 2주택(분양권·입주권포함)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담보 대출금지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을 세대당 1건으로 강화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안내

※ 2020.0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함.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전으로 단축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창원국가산업단지"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현재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자녀 양육 및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미성년자 포함) 또는 만 19세 이상인 재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인 포함)도 공급대상에 포함하여 청약이 가능하나, 경쟁발생 시 모집공고일(2022.04.08.)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창원시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창원시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바람.**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음.

| 구 분 | 특별공급<br>(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br>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반공급   |                                  |                           | 당첨자발표   | 당첨자 서류검수<br>(계약체결 전 서류심사<br>및 부적격 확인) | 계약체결   |
|-----|---|--|----------------------------------|---------------------------|---|---------------------------------------|--|
|     |   | 1순위  |                                  | 2순위                       |   |                                       |  |
|     |   | 해당지역<br>(창원시 1년이상<br>거주자)  | 기타지역<br>(창원시 1년 미만<br>거주자, 전국지역) |                           |   |                                       |  |
| 일 정 | 2022.04.18.(월)  | 2022.04.19(화)  | 2022.04.20.(수)                   | 2022.04.21.(목)            | 2022.04.27.(수)  | 2022.04.29.(금) ~ 2022.05.08.(일)       | 2022.05.09.(월) ~<br>2022.05.16.(월)   |
| 방 법 | 인터넷 청약<br>(09:00 ~ 17:30)   | 인터넷 청약<br>(09:00 ~ 17:30)  | 인터넷 청약<br>(09:00 ~ 17:30)        | 인터넷 청약<br>(09:00 ~ 17:30) | 개별조회<br>(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건본주택<br>(10:00 ~ 17:00)               | 건본주택<br>(10:00 ~ 16:00)  |
| 장 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본주택</li>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PC : www.applyhome.co.kr</li> <li>-스마트폰앱</li>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본주택</li> <li>- 구비서류 등을 지참(당첨자만 해당)</li> <li>■ 구비서류는 분양 홈페이지 참고</li> <li>■ 서류검수 접수 과열 시 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본주택 :</li> <li>힐스테이트 창원 더퍼스트</li> <li>(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168-1번지)</li> </ul>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건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 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람.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 2021.11.16.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름.

■ 본 입주자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로 인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창원시 주택정책과-11198호(2022.04.0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창원시 성산구 내동 산33-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5 ~ 33층 17개동 총 1,77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일반공급 1,109세대, 특별공급 670세대[일반(기관추천) 83세대, 다자녀가구 177세대, 신혼부부 159세대, 노부모부양 52세대, 생애최초 199세대 포함]}

■ 입주예정 : 2025년 09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사업주체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사업관계자의 귀책이 아닌 예기치 못한 사유(전염병 등)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그로 인한 입주지연보상금 등은 발생하지 않음.

**■ 공급대상**

(단위: m<sup>2</sup>, 세대)

| 주택 구분    | 주택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br>(전용면적기준) | 약식<br>표기 | 주택공급면적(m <sup>2</sup> ) |            |          | 기타<br>공용면적<br>(지하주차장등) | 계약<br>면적 | 세대별<br>대지지분 | 총공급<br>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          |           |          |     | 일반분양<br>세대수 | 최하층<br>우선배정<br>세대수 |
|----------|------------|----|-----------------|----------|-------------------------|------------|----------|------------------------|----------|-------------|------------|----------|-----------|----------|-----------|----------|-----|-------------|--------------------|
|          |            |    |                 |          | 주거<br>전용면적              | 주거<br>공용면적 | 소계       |                        |          |             |            | 기관<br>추천 | 다자녀<br>가구 | 신혼<br>부부 | 노부모<br>부양 | 생애<br>최초 | 계   |             |                    |
| 민영<br>주택 | 2022000205 | 01 | 084.9966        | 84       | 84.9966                 | 29.6574    | 114.6540 | 52.2987                | 166.9527 | 51.9000     | 795        | 83       | 79        | 159      | 24        | 199      | 544 | 251         | 28                 |
|          |            | 02 | 106.2474        | 106      | 106.2474                | 30.9628    | 137.2102 | 65.3744                | 202.5846 | 64.8761     | 328        | 0        | 32        | 0        | 9         | 0        | 41  | 287         | 12                 |
|          |            | 03 | 123.2229        | 123      | 123.2229                | 31.6046    | 154.8275 | 75.8196                | 230.6471 | 75.2415     | 412        | 0        | 42        | 0        | 12        | 0        | 54  | 358         | 14                 |
|          |            | 04 | 137.3297        | 137      | 137.3297                | 33.0489    | 170.3786 | 84.4995                | 254.8781 | 83.8553     | 244        | 0        | 24        | 0        | 7         | 0        | 31  | 213         | 8                  |
|          | 합 계        |    |                 |          |                         |            |          |                        |          |             |            | 1,779    | 83        | 177      | 159       | 52       | 199 | 670         | 1,109              |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m<sup>2</sup>)×0.3025 또는 공급면적(m<sup>2</sup>)÷3.3058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분양예정 건축시설물의 대지권(지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분함.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건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등은 약식표기 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 바람.

**■ 주택형 표시안내**

| 공고상(청약시)주택형 | 084.9966 | 106.2474 | 123.2229 | 137.3297 |
|-------------|----------|----------|----------|----------|
| 약식표기        | 84       | 106      | 123      | 137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사이버 건본주택 및 카탈로그 /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m<sup>2</sup>, 세대, 원, VAT포함)

| 주택형<br>(약식<br>표기) | 공급<br>세대수 | 층<br>(구분) | 해당<br>세대수 | 분양가격        |             |            |             | 계약금<br>(10%) | 중도금(60%)   |            |            |            |            |            | 잔금<br>(30%) |             |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소계          |              | 계약시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 6회          |             |
|                   |           |           |           |             |             |            |             | 2022.09.20   |            | 2023.03.20 | 2023.09.20 | 2024.04.19 | 2024.09.20 | 2025.03.20 | 입주지정일       |             |             |
| 84                | 795       | 1층        | 27        | 205,276,890 | 263,723,110 | -          | 469,000,000 | 46,900,000   | 46,900,000 | 46,900,000 | 46,900,000 | 46,900,000 | 46,900,000 | 46,900,000 | 46,900,000  | 140,700,000 |             |
|                   |           | 2층        | 28        | 207,903,040 | 267,096,960 | -          | 475,000,000 | 47,500,000   | 47,500,000 | 47,500,000 | 47,500,000 | 47,500,000 | 47,500,000 | 47,500,000 | 47,500,000  | 47,500,000  | 142,500,000 |
|                   |           | 3~5층      | 84        | 214,468,390 | 275,531,610 | -          | 490,000,000 | 49,000,000   | 49,000,000 | 49,000,000 | 49,000,000 | 49,000,000 | 49,000,000 | 49,000,000 | 49,000,000  | 49,000,000  | 147,000,000 |
|                   |           | 6~10층     | 140       | 218,845,300 | 281,154,700 | -          | 500,000,000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150,000,000 |
|                   |           | 11~20층    | 280       | 221,033,750 | 283,966,250 | -          | 505,000,000 | 50,500,000   | 50,500,000 | 50,500,000 | 50,500,000 | 50,500,000 | 50,500,000 | 50,500,000 | 50,500,000  | 50,500,000  | 151,500,000 |
|                   |           | 21층 이상    | 236       | 228,036,800 | 292,963,200 | -          | 521,000,000 | 52,100,000   | 52,100,000 | 52,100,000 | 52,100,000 | 52,100,000 | 52,100,000 | 52,100,000 | 52,100,000  | 52,100,000  | 156,300,000 |
| 106               | 328       | 1층        | 8         | 245,982,120 | 287,288,980 | 28,728,900 | 562,000,000 | 56,200,000   | 56,200,000 | 56,200,000 | 56,200,000 | 56,200,000 | 56,200,000 | 56,200,000 | 56,200,000  | 56,200,000  | 168,600,000 |
|                   |           | 2층        | 12        | 248,608,260 | 290,356,130 | 29,035,610 | 568,000,000 | 56,800,000   | 56,800,000 | 56,800,000 | 56,800,000 | 56,800,000 | 56,800,000 | 56,800,000 | 56,800,000  | 56,800,000  | 170,400,000 |
|                   |           | 3~5층      | 36        | 256,924,380 | 300,068,750 | 30,006,870 | 587,000,000 | 58,700,000   | 58,700,000 | 58,700,000 | 58,700,000 | 58,700,000 | 58,700,000 | 58,700,000 | 58,700,000  | 58,700,000  | 176,100,000 |
|                   |           | 6~10층     | 60        | 262,176,670 | 306,203,030 | 30,620,300 | 599,000,000 | 59,900,000   | 59,900,000 | 59,900,000 | 59,900,000 | 59,900,000 | 59,900,000 | 59,900,000 | 59,900,000  | 59,900,000  | 179,700,000 |
|                   |           | 11~20층    | 120       | 264,802,810 | 309,270,170 | 30,927,020 | 605,000,000 | 60,500,000   | 60,500,000 | 60,500,000 | 60,500,000 | 60,500,000 | 60,500,000 | 60,500,000 | 60,500,000  | 60,500,000  | 181,500,000 |
|                   |           | 21층 이상    | 92        | 272,681,240 | 318,471,600 | 31,847,160 | 623,000,000 | 62,300,000   | 62,300,000 | 62,300,000 | 62,300,000 | 62,300,000 | 62,300,000 | 62,300,000 | 62,300,000  | 62,300,000  | 186,900,000 |
| 123               | 412       | 1층        | 14        | 277,495,840 | 324,094,690 | 32,409,470 | 634,000,000 | 63,400,000   | 63,400,000 | 63,400,000 | 63,400,000 | 63,400,000 | 63,400,000 | 63,400,000 | 63,400,000  | 63,400,000  | 190,200,000 |
|                   |           | 2층        | 14        | 280,559,670 | 327,673,030 | 32,767,300 | 641,000,000 | 64,100,000   | 64,100,000 | 64,100,000 | 64,100,000 | 64,100,000 | 64,100,000 | 64,100,000 | 64,100,000  | 64,100,000  | 192,300,000 |
|                   |           | 3~5층      | 42        | 289,751,180 | 338,408,020 | 33,840,800 | 662,000,000 | 66,200,000   | 66,200,000 | 66,200,000 | 66,200,000 | 66,200,000 | 66,200,000 | 66,200,000 | 66,200,000  | 66,200,000  | 198,600,000 |
|                   |           | 6~10층     | 70        | 295,878,850 | 345,564,680 | 34,556,470 | 676,000,000 | 67,600,000   | 67,600,000 | 67,600,000 | 67,600,000 | 67,600,000 | 67,600,000 | 67,600,000 | 67,600,000  | 67,600,000  | 202,800,000 |
|                   |           | 11~20층    | 140       | 298,942,680 | 349,143,020 | 34,914,300 | 683,000,000 | 68,300,000   | 68,300,000 | 68,300,000 | 68,300,000 | 68,300,000 | 68,300,000 | 68,300,000 | 68,300,000  | 68,300,000  | 204,900,000 |
|                   |           | 21층 이상    | 132       | 307,696,490 | 359,366,830 | 35,936,680 | 703,000,000 | 70,300,000   | 70,300,000 | 70,300,000 | 70,300,000 | 70,300,000 | 70,300,000 | 70,300,000 | 70,300,000  | 70,300,000  | 210,900,000 |
| 137               | 244       | 1층        | 8         | 305,508,040 | 356,810,870 | 35,681,090 | 698,000,000 | 69,800,000   | 69,800,000 | 69,800,000 | 69,800,000 | 69,800,000 | 69,800,000 | 69,800,000 | 69,800,000  | 69,800,000  | 209,400,000 |
|                   |           | 2층        | 8         | 308,571,870 | 360,389,210 | 36,038,920 | 705,000,000 | 70,500,000   | 70,500,000 | 70,500,000 | 70,500,000 | 70,500,000 | 70,500,000 | 70,500,000 | 70,500,000  | 70,500,000  | 211,500,000 |
|                   |           | 3~5층      | 24        | 319,076,450 | 372,657,770 | 37,265,780 | 729,000,000 | 72,900,000   | 72,900,000 | 72,900,000 | 72,900,000 | 72,900,000 | 72,900,000 | 72,900,000 | 72,900,000  | 72,900,000  | 218,700,000 |
|                   |           | 6~10층     | 40        | 325,641,810 | 380,325,630 | 38,032,560 | 744,000,000 | 74,400,000   | 74,400,000 | 74,400,000 | 74,400,000 | 74,400,000 | 74,400,000 | 74,400,000 | 74,400,000  | 74,400,000  | 223,200,000 |
|                   |           | 11~20층    | 80        | 328,705,640 | 383,903,960 | 38,390,400 | 751,000,000 | 75,100,000   | 75,100,000 | 75,100,000 | 75,100,000 | 75,100,000 | 75,100,000 | 75,100,000 | 75,100,000  | 75,100,000  | 225,300,000 |
|                   |           | 21층 이상    | 84        | 338,772,520 | 395,661,350 | 39,566,130 | 774,000,000 | 77,400,000   | 77,400,000 | 77,400,000 | 77,400,000 | 77,400,000 | 77,400,000 | 77,400,000 | 77,400,000  | 77,400,000  | 232,200,000 |

※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창원특례시청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내에서 주택형별, 층별로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임.(85m<sup>2</sup>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님)

※ 상급공급금액은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공통 유의사항

- 상급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 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급 공급 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급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면적이 미포함 되어 있음.
- 상급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 제1항에 의거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창원특례시청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내에서 주택형별, 층별로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임.
- 상급 공급금액은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함.
- 상급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 품목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 상급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은 기타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상급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공부정리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을 하지 않음.
- 견본주택은 84, 106, 123, 137 타입이 건립되어 있음.
-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발코니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날 수 있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
- 본 주택은 계단식 구조로 설계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급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임시사용승인 또는 동별사용검사를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중도금 및 잔금 납입 약정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단, 연체료 납부시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중 선납한 금액 및 다른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고, 별도의 이자나 할인이 발생하지 않음.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을 원할 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의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급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대출에 따른 주택신용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에 관한 추가비용은 대출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함.(단, 사업주체는 사업주체의 알선조건에 충족하는 계약자 에게만 대출을 알선함)
- 분양대금의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된 납부일에 지급하여야 하며, 선납에 따른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 중도금,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통보받은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부적격 사유가 없음을 소명한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상급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하며 관계법령 등에 의거 입주자를 선정하여 동·호수를 배정함.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함.(사본 불가)
-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50%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가 용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임.(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음.

## II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 구 분           |               | 84    | 106 | 123 | 137 | 합계  |    |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 15    | 0   | 0   | 0   | 15  |    |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3    | 0   | 0   | 0   | 13  |    |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15    | 0   | 0   | 0   | 15  |    |
|               | 중소기업 근로자      | 19    | 0   | 0   | 0   | 19  |    |
|               | 장애인           | 경상남도  | 13  | 0   | 0   | 0   | 13 |
|               |               | 부산광역시 | 1   | 0   | 0   | 0   | 1  |
|               |               | 울산광역시 | 1   | 0   | 0   | 0   | 1  |
|               | 북한이탈주민        | 4     | 0   | 0   | 0   | 4   |    |
| 철거민           | 2             | 0     | 0   | 0   | 2   |     |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79    | 32  | 42  | 24  | 177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159   | 0   | 0   | 0   | 159 |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24    | 9   | 12  | 7   | 52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199   | 0   | 0   | 0   | 199 |    |
| 합 계           |               | 544   | 41  | 54  | 31  | 670 |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으로 선정함.

※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함.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함.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함.

■ 특별공급 공통사항

| 구분                      | 내용  |
|-------------------------|---|
| 1회 한정/<br>자격요건/<br>자격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b>1세대 1주택의 기준</b>(1세대 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1인만 청약 신청가능,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주 한정)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li> </ul>   |
| 무주택<br>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li>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b>무주택세대구성원</b> 요건</li> <li>-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b>무주택세대주</b> 요건</li> </ul> </li> </ul> </li> <li>※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li> </ul> |

|                    | <p>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br/>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br/>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br/>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p>   |          |                       |          |                       |             |       |       |       |              |       |       |       |              |         |       |       |      |         |         |       |
|--------------------|--|----------|-----------------------|----------|-----------------------|-------------|-------|-------|-------|--------------|-------|-------|-------|--------------|---------|-------|-------|------|---------|---------|-------|
| <p>청약자격<br/>요건</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li> </ul> </li>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li>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p> <p style="text-align: center;"><b>[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 style="text-align: center;">그 밖의 광역시</th> <th style="text-align: center;">특별시 및 광역시 제외지역(창원시 등)</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용면적 85㎡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용면적 102㎡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용면적 135㎡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7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모든면적</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만원</td> </tr> </tbody> </table> | 구 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 제외지역(창원시 등)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구 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 제외지역(창원시 등)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             |       |       |       |              |       |       |       |              |         |       |       |      |         |         |       |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             |       |       |       |              |       |       |       |              |         |       |       |      |         |         |       |
| <p>유의사항</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됨.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함.<br/> ※ 정보취약계층(노약자, 장애인 등)에 한하여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가급적 인터넷 신청을 권장함.</li> <li>• 인터넷 청약(청약Home)의 경우 서류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방문접수(건본주택)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함.</li> <li>•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li> <li>•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청약 시 둘 다 무효 처리함.</li> <li>•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li> <li>• 주택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당첨 검수일(계약체결 전 서류접수) 또는 계약체결 전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li> <li>•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됨.(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li> <li>• 일반(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과거에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였다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li> <li>•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li> <li>•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li> <li>• 특별공급은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li> <li>•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후 당첨시 부적격 처리 됩니다.</li> </ul> <p>※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p>  |          |                       |          |                       |             |       |       |       |              |       |       |       |              |         |       |       |      |         |         |       |

■ **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83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되며,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공급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철거민,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구 분                  | 관 련 법 규  | 해 당 기 관           |
|----------------------|--|-------------------|
| 국가유공자(장기복무제대군인 포함)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 부터 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 경상남도 동부보훈지청       |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 중소기업근로자              |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경상남도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경상남도청 장애인복지과      |
| 북한이탈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통일부 하나원 교육기획과     |
| 철거민                  | 해당 사업부지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열람 공고일 현재 철거가옥 소유 자 등         | 경상남도 창원시청 공원녹지과   |

■ **대상세대 : 83세대**

| 구 분           | 84            | 합계 |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 15 |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3 |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15 |
|               | 중소기업 근로자      | 19 |
|               | 장애인           | 15 |
|               | 북한이탈자         | 4  |
|               | 철거민           | 2  |
| 계             | 83            | 83 |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소형·저가 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77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를 비롯한 전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포함)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자격요건**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아, 입양자녀도 포함 됨.[임신의 경우 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분양권 전매 요청시 임신자격이 유지(또는 출산)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신자격이 유지(또는 출산)되고 있다고 사업주체가 판단하는 경우에만 분양권 전매 요청을 접수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함.
-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함.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함.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대상세대 : 177세대

| 구 분      | 84 | 106 | 123 | 137 | 합계  |
|----------|----|-----|-----|-----|-----|
| 다자녀 특별공급 | 79 | 32  | 42  | 24  | 177 |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창원시에 1년이상 거주한자)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태아포함)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접수 시 배점표에 자필 작성 및 점수 기재)

|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 비고  |
|---------------|-----|----------------|----|---|
|               |     | 기준             | 점수 |   |
| 계             | 100 |                |    |   |
| 미성년 자녀수(1)    | 40  |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               |     | 미성년 자녀 4명      | 35 |   |
|               |     | 미성년 자녀 3명      | 30 |   |
| 영유아 자녀수(2)    | 15  |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               |     | 자녀 중 영유아 2명    | 10 |   |
|               |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  |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
|               |     | 한부모 가족         | 5  |   |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 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br>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 15  | 10년 이상         | 15 |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경상남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br>*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공급신청자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시 작성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오류,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 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 159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를 비롯한 전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의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재혼을 포함하나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이하)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 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자녀수 산정 시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 자녀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함.

■ **대상세대 : 159세대**

| 구 분       | 84  | 합계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159 | 159 |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함.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창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창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함.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공급유형  |                     | 구분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소득 기준 구분  | 우선공급<br>(기준소득, 50%)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이하                     | ~6,208,934원           | ~7,200,809원            | ~7,326,072원            | ~7,779,825원            | ~8,233,578원            | ~8,687,331원             |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120% 이하             | 6,208,935원~7,450,721원 | 7,200,810원~8,640,971원  | 7,326,073원~8,791,286원  | 7,779,826원~9,335,790원  | 8,233,579원~9,880,294원  | 8,687,332원~10,424,797원  |
|   | 일반공급<br>(상위소득, 20%)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100%초과~140%이하               | 6,208,935원~8,692,508원 | 7,200,810원~10,081,133원 | 7,326,073원~10,256,501원 | 7,779,826원~10,891,755원 | 8,233,579원~11,527,009원 | 8,687,332원~12,162,263원  |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초과~160%이하               | 7,450,722원~9,934,294원 | 8,640,972원~11,521,294원 | 8,791,287원~11,721,715원 | 9,335,791원~12,447,720원 | 9,880,295원~13,173,725원 | 10,424,798원~13,899,730원 |
|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 8,692,509원~           | 10,081,134원~           | 10,256,502원~           | 10,891,756원~           | 11,527,010원~           | 12,162,264원~            |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 9,934,295원~           | 11,521,295원~           | 11,721,716원~           | 12,447,721원~           | 13,173,726원~           | 13,899,731원~            |
|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br>-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br>- 추첨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                   |                             |                       |                        |                        |                        |                        |                         |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자산보유기준

| 구분             | 자산보유기준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
|----------------|--------------|-------------|---|
| 부동산<br>(건물+토지) | 3억3,100만원 이하 | 건축물         |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      |   |                                  | <table border="1">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 colspan="2">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 colspan="2">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 colspan="2">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 colspan="2">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able> |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주 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   |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  |     |                    |               |  |      |                                  |  |      |  |                 |  |
| 주 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  |            |  |            |  |     |                    |               |  |      |                                  |  |      |  |                 |  |
|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            |  |            |  |     |                    |               |  |      |                                  |  |      |  |                 |  |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            |  |     |                    |               |  |      |                                  |  |      |  |                 |  |
| 토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 된 경우</li> <li>-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ul> </li> <li>•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                                  |  |  |            |  |            |  |     |                    |               |  |      |                                  |  |      |  |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 3)

|  |  |
|--|--|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 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상의 명시된 총급여액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신청자 명의로 사업자(법인)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사업소득이 법인인감이 날인된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조서 등)로 근로소득을 확인한 후 두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52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를 비롯한 전국에 거주하고,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대상세대 : 52세대**

|            |    |     |     |     |    |
|------------|----|-----|-----|-----|----|
| 구 분        | 84 | 106 | 123 | 137 | 합계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24 | 9   | 12  | 7   | 52 |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창원시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25% 범위) : 199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를 비롯한 전국에 거주하는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대상세대 : 199세대**

|           |     |     |
|-----------|-----|-----|
| 구분        | 84  | 합계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199 | 199 |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공급유형      | 구분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소득 기준 구분  |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 130% 이하                     | ~8,071,614원             | ~9,361,052원              | ~9,523,894원              | ~10,113,773원              | ~10,703,651원              | ~11,293,530원              |
|           |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 130% 초과 ~ 160% 이하           | 8,071,615원 ~ 9,934,294원 | 9,361,053원 ~ 11,521,294원 | 9,523,895원 ~ 11,721,715원 | 10,113,774원 ~ 12,447,720원 | 10,703,652원 ~ 13,173,725원 | 11,293,531원 ~ 13,899,730원 |
| 추첨제 (30%) |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 160% 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 9,934,295원~             | 11,521,295원~             | 11,721,716원~             | 12,447,721원~              | 13,173,726원~              | 13,899,731원~              |
|           |                      | 160% 이하                     | ~9,934,294원             | ~11,521,294원             | ~11,721,715원             | ~12,447,720원              | ~13,173,725원              | ~13,899,730원              |
|           | 1인 가구                | 160% 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 9,934,295원~             | 11,521,295원~             | 11,721,716원~             | 12,447,721원~              | 13,173,726원~              | 13,899,731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불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자산보유기준

| 구분             | 자산보유기준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            |  |            |     |                    |               |      |                                  |      |  |                 |
|----------------|--|----------------------------------|---|------------|--|------------|-----|--------------------|---------------|------|----------------------------------|------|--|-----------------|
| 부동산<br>(건물+토지) | 3억3,100만원<br>이하  | 건축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주 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     |                    |               |      |                                  |      |  |                 |
| 주 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            |  |            |     |                    |               |      |                                  |      |  |                 |
|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  |            |     |                    |               |      |                                  |      |  |                 |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     |                    |               |      |                                  |      |  |                 |
| 토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ul> </li> <li>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                                  |   |            |  |            |     |                    |               |      |                                  |      |  |                 |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창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  |
|------|--|
| 신청자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를 비롯한 전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인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li> <li>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할 경우, 기타지역으로 청약할 수 있음.</li> <li>동일순위 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3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창원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 시 기타지역(전국) 거주자에 공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일반공급 1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li> <li>- 세대주일 것</li> </ul> </li> </ul> </li> </ul>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li> <li>-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li> </ul>  |
| <b>청약신청<br/>유의사항</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li> <li>▪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함.</li> <li>▪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li> <li>▪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됨.</li> <li>▪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li> <li>▪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br/>[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li> <li>▪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li> <li>▪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br/>(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li> <li>▪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li> <li>② 청약부금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하여는 청약통장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li> <li>③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li> <li>④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li> <li>⑤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br/>(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li> </ul> </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규모선택 및 변경절차 폐지(2017.04.03.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적용)에 따라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청약 가능함.</li> <li>▪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li> <li>▪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li> <li>▪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함.</li> <li>▪ 청약시 기입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청약이후 변동 시 당첨자는 당사에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함.</li> <li>▪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li> <li>▪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li> <li>▪ 인터넷 청약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li> </ul> |

■ 입주자저축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예치 기준금액)

| 구 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 제외 지역(창원시 등) |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 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6.12.30.)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가 폐지됨.

- 주택 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에 따라 순위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기간 및 예치금(잔액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함.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순위산정은 현행과 동일함)

-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 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산정함.

■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 구분   | 순위  | 주택형       | 청약관련 신청자격   |
|------|-----|-----------|---|
| 민영주택 | 1순위 | 전용 85㎡ 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75%, 추천제 25%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천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li>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ol> </li> </ul> |
|      |     | 전용 85㎡ 초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용면적 85㎡ 초과 : 가점제 30%, 추천제 70%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천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li>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ol> </li> </ul>   |
|      | 2순위 | 전 주택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li> </ul>   |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 구분              | 내용   |
|-----------------|--|
|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li> <li>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함.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함.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li> <li>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li> <li>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함)</li> </ol> </li> <li>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li> </ol>  |
|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함.</li> <li>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직계존속</li> <li>-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함.</li> </ul> </li> </ul> </li> <li>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li> </ul> </li> <li>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li> </ul> </li> </ol> |

|                        |   |
|------------------------|---|
|                        |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
| ④ 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 청약 가점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할 서류 등   |
|--------------------------|------|---------------------|----|-----------------|----|--|
| ① 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본</li> <li>(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li> <li>·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li> <li>·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li> <li>※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li> </ul>   |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 ② 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초본</li> <li>·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li> <li>·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li> <li>(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li> <li>(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li> </ul> |
|                          |      | 1명                  | 10 | 5명              | 30 |  |
|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      | 3명                  | 20 |                 |    |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li> </ul>   |
|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                     |    |                 |    |  |

※ 제28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됨.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 구 분                 | 선 정 방 법  |
|---------------------|--|
|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li> <li>·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li> <li>▪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지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함.</li> <li>▪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li> <li>▪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li> </ul>   |
| <p><b>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b></li> <li>▪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li> <li>-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가점제로, 나머지 7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li> </ul> </li> <li>*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li> <li>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li> </ol> </li> <li>▪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 1년이상 거주신청자가 기타지역(경상남도를 포함한 전국) 거주신청자 보다 우선함.</li> <li>▪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b>400%</b>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li> <li>▪ <b>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함.</b></li> <li>▪ <b>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li> </ul> </li> <li>-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li> </ul> </li> <li>▪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li> </ul> |
| <p><b>유의사항</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함.</li> <li>▪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함.</li> <li>▪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아니함.</li> <li>▪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li> <li>▪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됨.</li> </ul>  |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당일 접수시간까지는 수정 가능),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 제7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 구분   | 신청대상자                              |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 2022.04.18.(월)<br>(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br>(건본주택 : 10:00~14:00) | · 인터넷 청약<br>(PC 또는 스마트폰)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br>· 힐스테이트 창원 더퍼스트 건본주택<br>(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168-1번지) |
| 일반공급 | 1순위                                | 해당지역<br>(창원시 1년이상 거주자) | 2022.04.19.(화) 09:00~17:30   | · 인터넷 청약<br>(PC 또는 스마트폰)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br>-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
|      |                                    | 기타지역                   | 2022.04.20.(수) 09:00~17:30   |                          |   |
|      | 2순위                                |                        | 2022.04.21.(목) 09:00~17:30   |                          |   |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람.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 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됨.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 후 입력하여야 함.

※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 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람.

| 한국부동산원(순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
|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음.]   |
|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함.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함.                                   |
|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 구분  | 구비사항  |   |         |           |   |
|---|---|---|---------|-----------|---|
| 일반<br>공급  | 본인 신청 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li> <li>인감도장 또는 본인 서명</li> <li>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li> <li>주민등록표등본 1통</li> </ul>   |         |           |   |
|   | 제3자 대리신청 시<br>추가사항<br>(배우자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50%;">인감증명 방식</th> <th style="width:50%;">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청약자의 <b>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b>(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br/>※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자가 <b>자필 서명한 위임장</b>(‘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br/>※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r> </tbody> </table>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청약자의 <b>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b>(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br/>※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청약자의 <b>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b>(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br/>※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자가 <b>자필 서명한 위임장</b>(‘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br/>※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         |           |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함.

■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서류 (계약체결 전 제출)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발급기준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br>(해당자) |                         |   |   |
| 공통서류 | ○    |             | 서약서, 개인정보수집<br>이용제공 동의서 | 본인  | 건분주택 비치   |
|      | ○    |             | 인감증명서 또는<br>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br>※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 불가                                   |
|      | ○    |             | 주민등록표 등본 (상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             | 주민등록표 초본 (상세)           |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           | 주민등록표 등본                |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      | ○    |             | 신분증, 인감도장               |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 단독세대 및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br>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 신청자와의 관계 |
| ○    |      | 출입국사실증명서    | 본인                      | 국내거주기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br>기록대조일은 해당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발급 |   |

|                |   |           |  |  |   |
|----------------|---|-----------|--|--|---|
|                |   | ○         | 출입국사실증명서   | 직계 존·비속  | 피부양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및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기록대조일은 해당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발급                                     |
|                |   | ○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기관추천 특별공급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제외)<br>※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기관추천<br>특별공급   |   | ○         |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 본인   |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된 추천대상자에 한하여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신청자격 인정<br>※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또는 인증서, 추천명부로 접수                                    |
|                |   | ○         | 복무확인서  |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또는 25년)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 다자녀 가구<br>특별공급 |   | ○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                |   |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 공급신청자가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입증받기 위한 경우, "상세"로 발급  |
|                |   | ○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br>(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임신증명서류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로 제출 불가)               |
|                |   | ○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 입양의 경우  |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 임신의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                |   | ○         | 주민등록표 초본 (상세)  |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   |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
|                | ○ | 출입국 사실증명서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피부양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및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기록대조일은 해당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발급  |   |
| 신혼부부<br>특별공급   | ○ |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   |
|                | ○ | ○         | 자격요건 확인서   |  | 혼인 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건본주택 비치)   |
|                |   | ○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br>(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임신증명서류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로 제출(불가))              |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 입양의 경우  |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 임신의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                |   |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직계비속   | 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혼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
|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 소득증빙서류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 제출)                                 |
|                | ○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
|                | ○ | 출입국 사실증명서 |  | 피부양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및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기록대조일은 해당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발급  |   |
|                | ○ | 부동산소유현황   | 본인 및 세대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br>-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br>-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 생애최초<br>특별공급   | ○ |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 혼인 신고일 확인, '상세'로 발급(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   |
|                | ○ | ○         | 자격요건 확인서   |  | 혼인 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건본주택 비치)   |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br>(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                |   |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직계비속   | 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혼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
|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소득증빙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br>※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  |   |

|             |   |   |              |   |
|-------------|---|---|--------------|---|
|             |   |   |              |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             |   | ○ | 비사업자 확인각서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             | ○ |   | 소득세 입증서류     | 본인<br>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br>*[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             |   | ○ | 출입국사실증명서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br>피부양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및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기록대조일은 해당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발급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 ○ | 부동산소유현황      | 본인 및 세대원<br>-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br>-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br>-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   |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br>만 30세 미만 공급신청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br>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
|             |   | ○ | 출입국사실증명서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br>피부양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및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br>※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br>*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br>*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기록대조일은 해당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발급 |
|             |   | ○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 직계존속<br>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직계존속<br>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상세'로 발급  |
|             |   | ○ | 주민등록초본 (상세)  | 직계비속<br>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             |   |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직계비속<br>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일반공급 (가점제)  |   |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br>만30세 미만 청약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br>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에 한함), '상세'로 발급<br>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 분리 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
|             |   | ○ | 출입국 사실증명서    |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기록대조일은 해당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발급   |
|             |   | ○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 직계존속<br>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 확인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3년간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직계존속<br>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상세'로 발급   |
|             |   | ○ | 출입국 사실증명서    | 직계존속<br>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 시 및 공급신청자가 단신 부임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br>*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br>"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br>*기록대조일은 해당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발급  |
|             |   | ○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 직계비속<br>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 확인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직계비속<br>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   | ○ | 출입국 사실증명서    | 직계비속<br>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 시 및 공급신청자가 단신 부임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br>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br>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  |   |                  |              |   |
|--|---|------------------|--------------|---|
|  |   |                  |              |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기록대조일은 해당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발급  |
| 해외근무자<br>(단신부임)<br>입증서류                | ○ | 해외체류 증빙서류        |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br>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br>※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  | ○ | 출입국사실증명서         |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br>기록대조일은 해당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발급   |
|  | ○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br>※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 부적격<br>통보를<br>받은자                      | ○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해당 주택        |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br>·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br>·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br>·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 당첨사실 소명서류        | 해당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대리인<br>제출시<br>(본인 외<br>모두 제3자로<br>간주함) | ○ | 위임장              |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  | ○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              |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 신청용(청약자 본인 발급용)<br>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  | ○ | 인감도장             |              | 인감증명서와 대조 必,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  | ○ | 신분증              |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주민등록표등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함.

※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됨.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 해당자격 |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br>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br>※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br>※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 ① 해당직장<br>② 해당직장/세무서   |
|      |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br>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br>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br>④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br>※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①,②,③ 해당직장<br>④ 국민연금공단 |

|                  |   |   |                     |
|------------------|---|---|---------------------|
|                  | 전년도 전직 근로자                                  |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② 재직증명서<br>※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①,② 해당직장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br>(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명세서)<br>※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① 해당직장              |
| 자<br>영<br>업<br>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br>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①,② 세무서             |
|                  |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 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②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 ① 국민연금공단<br>② 세무서   |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②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br>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① 국민연금공단<br>②,③ 세무서 |
|                  | 법인사업자                                       |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 ① 세무서 ② 등기소         |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br>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① 세무서, 해당직장         |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원본  | ① 주민센터              |
|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①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명세서)<br>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① 해당직장<br>② 국민연금공단  |
|                  | 무직자   |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별도서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① 건본주택              |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음.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청약신청자 본인)

| 구 분        | 해당자격   | 증빙 제출서류   | 발급처                             |
|------------|--|---|---------------------------------|
| 자격 입증서류    |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① 해당직장 / 세무서<br>② 건본주택          |
|            |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br>과거 1년 이내<br>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납부내역증명 포함)<br>※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br>② 비사업자확인각서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 중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   |                                 |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br>(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br>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br>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br>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br>※ 결정세액 환급확인자의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추가제출<br>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br>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① 세무서<br>② 해당직장<br>③ 해당직장 / 세무서 |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구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계약체결  |
|------|------------------------------------|--|---|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2022.04.27.(수)</li> <li>· 확인방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li> <li>- 2022.05.09.(월) ~ 2022.05.16.(월) (10:00~16:00)</li> </ul> |
| 일반공급 | 1순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li> <li>*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 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소</li> <li>- 힐스테이트 창원퍼스트 견본주택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168-1</li> </ul>       |
|      | 2순위                                |  |   |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치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람.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람.)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홈페이지([http://www.hillstate.co.kr/s/#changwon\\_thefirst](http://www.hillstate.co.kr/s/#changwon_thefirst))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구분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
|-----------|------|---|
| 이용기간      |      | 2022.04.27.(수) ~ 2022.05.06.(금) (10일간)  |
| 인터넷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li> <li>-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li> <li>※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gt;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gt;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li> </ul> |
| 휴대폰 문자서비스 | 대상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
|           | 제공일시 | 2022.04.27.(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함.

VI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계약금)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구분        | 계약기간  | 계약장소  | 문의전화         |
|-----------|---|---|--------------|
| 당첨자 계약 체결 | <b>2022.05.09.(월)~2022.05.16.(월)</b><br>(10:00~16:00) | 힐스테이트 창원 더퍼스트 건본주택<br>(주소: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람동 168-1번지) | 055-267-1779 |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함.(건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아래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  |
|------------------|--|
| 제출기한(특별공급 당첨자포함) | <b>2022.04.29.(금) ~ 2022.05.08.(일)</b>   |
| 제출처              | 힐스테이트 창원 더퍼스트 건본주택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람동 168-1번지)   |
| 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예비 당첨자 및 일반공급 예비 당첨자의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은 추후 분양홈페이지 및 개별안내 해드릴 예정입니다.</li> <li>※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의 경우 건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확인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람. 단, 계약체결 시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람.</li> <li>※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 체결 시 필요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li> <li>※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 함.</li> <li>※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소명기간 내(계약 체결 이전)에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li> </ul> |

#### ■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 구 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 기준 | 확인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br>(해당자)         |                        |       |   |
| 본인 계약 시           | ○    |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
|                   | ○    |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 건본주택 비치   |
|                   | ○    |                     | 신분증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                   | ○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용)<br>※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 ○    |                     | 인감도장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
|                   | ○    |                     | 전자수입인지 납부증명서           |       | ※ 해당 세대의 공급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한 전자수입인지 수입인지 세액 : 1억원 이상~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br><수입인지 구입처><br>- 오프라인 : 우체국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br>-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                   |      | ○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       | 해당자   |
|                   | ○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       |   |
| 대리인 계약시<br>(본인이외) |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
|                   | ○    |                     | 신분증                    |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br>(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체결 시 대리인 방문이 불가하며 본인이 방문하여야 함.

##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지정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 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며 현상수납은 불가)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 ■ 이종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 함.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7일)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④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건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건본주택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 당첨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으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건본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임.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납입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향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도면에 준하며, 건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외국인 포함)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시행일(2020.10.27.) 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계약 (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 거래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함.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통보함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자 대출 안내

-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50%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타 금융기관 미적용)
- 계약자는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한 중도금대출 신청건에 한하여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지정일(입주 개시일)전일까지 시행위탁자에서 대납해 주며, 입주시점에 시행위탁자 및 시행수탁자에서 지정한 기일내에 시행위탁자에서 대납한 이자를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일시 납부하여야 함.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금융기관 확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예정임.**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대출 부적격 사유 등으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계약자는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위탁자의 중도금 대출 앞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중도금대출 은행의 앞선은 시행위탁자의 의무 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시행위탁자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시행위탁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또한, 법인,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기 바람)
- 금융관련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건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임.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함.**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적격대출 시 대출은행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 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시행위탁자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은행의 조건에 따르기로 함.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중도금 대출 및 보증 관련하여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본 입주자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름.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   |
|----------|---------------------------|------------------|-------------|--|
| 계약금 납부계좌 | 경남은행                      | 800-8108-1209-39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입금시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br>ex)103동702호 홍길동 → 1030702홍길동 |
| 중도금 / 잔금 | 계약 체결 시 세대별 개별계좌 부여(가상계좌) |                  |             |  |

-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됨.
-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경남은행, 207-0131-0858-05, (주)하나자산신탁**]로 관리됨.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중도금 및 잔금은 공급계약 시 부여되는 개인별 가상계좌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개인별 가상계좌로 납부한 분양대금은 모집공고상 분양대금 관리계좌로 입금됨. 개인별 가상계좌는 세대별로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람.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예 : 103동702호 홍길동 →1030702홍길동)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멸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미납 시 공급계약서에 따른 연체료가 가산됨.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시행수탁자 및 시행위탁자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과 관련한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상기의 분양대금 납부계좌와는 다르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사업주체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받으며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일체 책임지지 않음. (건본주택에서 현상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람.)
- 본 주택의 중도금은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 시,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음.(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현금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는 상기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자에게 서면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잔여 분양대금은 변경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만일 계약자의 계약서상의 주소지 및 연락처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 후 1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서면(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함.
- 만일, 분양대금을 과오납할 경우, 사업주체로 환불신청서(사업주체양식) 및 구비서류(입금확인증, 통장사본, 신분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환불 예정임.

**Ⅶ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공통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입니다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신청 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체결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 구분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
|----|---|----------------------------------|
| 문  | 목재문(문틀 및 문짝 도어레버, 경첩, 문선), ABS문(문틀 및 문짝, 도어레버, 경첩, 문선)                                      | PL 창호, 세대 현관 방화문 및 도어록, 대피공간 방화문 |
| 바닥 | 바닥재(마루, 현관바닥타일 및 디딤판 엔지니어드스톤), 걸레받이, 현관/발코니/다용도실 바닥타일 및 발코니/다용도실 재료분리대                      | 바닥난방 + 시멘트몰탈(발코니 확장부위 제외)        |
| 벽  | 벽지, 타일, 발코니벽 도장, 신발장, 복도 팬트리, 화장대(상판 및 거울포함), 드레스룸(도어 및 시스템 선반 포함), 반침장 등 가구일체, 재료분리대(욕실포함) | 콘크리트 벽체 바탕처리 또는 기타부위 석고보드 마감     |
| 천장 | 천장지(벽지류), 반자돌림(몰딩), 인테리어 마감, 발코니 천장 도장, 전동빨래건조대   | 천장을 위 석고보드 마감                    |

| 구 분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
|------|---|-----------------------------------|
| 욕실   | 타일(바닥, 벽),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수전 및 헤드수전, 비데 등), 천장, 샤워부스, 욕실 액세서리 일체, 욕실장, 바닥 배수구 커버, 욕실 환풍기, 욕실 스피커폰     | 액체방수 및 구체 위 바탕처리, 설비배관, 전기배관 및 배선 |
| 주방   | 주방가구 및 기구(상판 및 악세서리 포함), 팬트리장(도어 및 시스템선반 포함), 벽타일(타일붙임 몰탈 포함), 설비수전류(절수페달 포함), 가스쿡탑, 렌지후드, 주방액정TV 등 가전기기 일체 | 소방검사 관련 자동식소화기, 주방 배기덕트           |
| 조명기구 | 부착, 매립, 거치형 조명기구(간접조명 포함), 욕실 매입등   | 배선기구류(스위치, 콘센트)                   |
| 일반가구 | 신발장, 화장대, 드레스룸 시스템가구, 팬트리   | -                                 |
| 기타   | 발코니 수전류, 전열교환기 및 환기덕트   | 설비배관, 거실월패드, 외부 발코니난간대            |

\*평형 및 타입별 품목이 상이 할수 있으므로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마이너스 옵션금액

[단위 : 원 / VAT 포함]

| 주택형       | 84         | 106        | 123        | 137        | 비 고           |
|-----------|------------|------------|------------|------------|---------------|
| 마이너스 옵션금액 | 31,955,000 | 38,817,000 | 44,498,000 | 48,277,000 | 취득세 및 등록세 미포함 |

### ※ 마이너스 옵션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 별 마이너스옵션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됨.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에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기본형에서 마이너스 옵션을 반영하여 시공됨.
- 마이너스옵션 선택을 하신 후 사업주체와 무관하게 계약자의 개별적인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시공 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산정지침 제3조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일)부터 60일 이내에 법 규정을 준수하여 기본선택 품목(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향후 계약자가 시공할 경우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를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부분 공사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 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기 시공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 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Ⅷ

발코니 확장 및 선택품목 계약 등

■ 발코니 확장

[단위 : 원 / VAT포함]

| 주택형 (약식표기) | 발코니 확장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비고 |
|------------|------------|-----------|------------|-----------|----|
|            |            | 계약시       | 2023.03.20 | 입주지정일     |    |
| 84         | 8,790,000  | 879,000   | 879,000    | 7,032,000 |    |
| 106        | 9,030,000  | 903,000   | 903,000    | 7,224,000 |    |
| 123        | 11,580,000 | 1,158,000 | 1,158,000  | 9,264,000 |    |
| 137        | 11,980,000 | 1,198,000 | 1,198,000  | 9,584,000 |    |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확장비용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및 추가 선택품목 입금계좌와 혼돈하지 않으시기 바람.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   |
|----------|------|------------------|-------------|--|
| 발코니확장 대금 | 하나은행 | 591-910058-69904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입금시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br>ex)103동702호 홍길동 → 1030702홍길동 |

-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은 상기계좌로 납부하여야 함.(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발코니확장비용은 상기 납부계좌로 반드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건본주택 현금수납 불가) 하시기 바람, 입금 시 계약할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예 : 103동702호 홍길동 →1030702홍길동)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발코니 확장은 시행수탁자인 (주)하나자산신탁과 무관하며, 시공사인 (주)삼정이앤시와 별도 계약을 통해 진행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시행수탁자인 (주)하나자산신탁은 대리사무계약에 따른 계좌 관리만 진행함.)
- 발코니확장의 중도금 및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람,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발코니확장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대금은 인정하지 않음.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시행위탁자 및 시행수탁자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발코니확장의 계약금 계좌와 분양대금, 옵션 계좌는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확장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입주 시 개별 납부)
- 발코니확장비용을 납부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확인서 등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제출하시기 바람.(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

2)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건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 품목으로 공동주택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함.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모든 옵션 및 선택형은 발코니 확장시 선택가능하며, 건본주택 및 카달로그에 표기된 유·무상 여부의 기준은 기본확장형 선택시 기준으로 작성됨.
- 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형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 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함.
- 상기 발코니확장 공급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샷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 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음.
- 시공상(설계변경, 자재발주, 골조공사 등)의 문제로 계약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변경)계약이 불가능하며, 발코니 확장 계약 등은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가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 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손잡이 모양)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실시공시 단위세대 내부에 결로방지를 위하여 일부 천장 및 벽체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선홍통 박스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공 범위 외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시행위탁자, 시행수탁자, 시공사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 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 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 하였음.
  - 발코니 확장 시 관련 법령 상 발코니가 대피공간으로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건본 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람.
  - 발코니확장 미선택시 세대 내 발코니확장 포함 품목은 시공되지 않음.(화장대 및 상판, 시스템가구, 전동식 빨래건조대, 주방가구 일부, 침실 반침장)
  - 실외기가 설치된 공간의 출입문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발코니 확장 창호는 성능 및 안전 개선 등으로 창호의 형태, 형식,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 변경 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유상 옵션)

1)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 VAT포함]

| 타입  | 제조사          | 구분  | 대수   | 설치장소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
|-----|--------------|-----|------|------|---------------------------------|-----------|------------|---------|-----------|
|     |              |     |      |      |                                 | 계약시       | 2023.03.20 | 입주지정일   |           |
| 84  | LG전자<br>삼성전자 | 일반형 | ALT1 | 3    | 거실 + 주방 + 침실1                   | 5,200,000 | 520,000    | 520,000 | 4,160,000 |
|     |              |     | ALT2 | 5    |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7,500,000 | 750,000    | 750,000 | 6,000,000 |
|     |              |     | ALT3 | 6    |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알파룸 | 8,700,000 | 870,000    | 870,000 | 6,960,000 |
| 106 | LG전자<br>삼성전자 | 일반형 | ALT1 | 3    | 거실 + 주방 + 침실1                   | 5,600,000 | 560,000    | 560,000 | 4,480,000 |
|     |              |     | ALT2 | 6    |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 9,100,000 | 910,000    | 910,000 | 7,280,000 |
| 123 | LG전자<br>삼성전자 | 일반형 | ALT1 | 3    | 거실 + 주방 + 침실1                   | 5,800,000 | 580,000    | 580,000 | 4,640,000 |
|     |              |     | ALT2 | 6    |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 9,400,000 | 940,000    | 940,000 | 7,520,000 |
| 137 | LG전자<br>삼성전자 | 일반형 | ALT1 | 3    | 거실 + 주방 + 침실1                   | 6,000,000 | 600,000    | 600,000 | 4,800,000 |
|     |              |     | ALT2 | 6    |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 9,600,000 | 960,000    | 960,000 | 7,680,000 |

-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지자체로부터 계약자에게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옵션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 에어컨 옵션금액은 아파트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옵션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추후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시스템 에어컨 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또는 사업주체가 별도 지정한 기간 내 시스템 에어컨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시스템 에어컨 설치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며, 계약 후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함.
- 건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건본주택용 냉난방 실내기가 설치되었으며, 본 공사시 적용될 시스템 에어컨은 난방기능이 없음.
- 상기 옵션품목의 계약조건(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의 납부금액 또는 납부일정, 계약체결 일정 등)은 변동될 수 있음.
- 옵션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옵션계약도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됨.
-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거실-스탠드형, 침실1-벽걸이형 총 2개소의 냉매 매립배관이 제공됨.
- 시스템 에어컨 옵션선택시 거실-스탠드형, 침실1-벽걸이형 전용 콘센트를 제공하지 않으며, 해당 공사비용은 옵션선택시 공사비용에 차감 반영되어 있음.
- 옵션선택시 실외기는 발코니 내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단위세대 타입별로 실외기실 위치 및 크기가 상이하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건본주택에는 건본주택용으로 LG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었으며 본 공사 시, 제조사는 삼성/LG 옵션 선택이 가능함.

2) 마감자재 유상옵션 선택품목

[단위 : 원 / VAT포함]

| 주택형 | 품목                |       | 제조사 및 모델명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
|     |                   |       |   |           | 계약시      | 2023.03.20 | 입주지정일     |
| 84  | 거실 아트월            | 세라믹타일 | 리바트<br>(84/106/123 Type : 두오모<br>137 Type : CALACATTA GOLD) | 2,800,000 | 280,000  | 280,000    | 2,240,000 |
| 106 |                   |       |   | 3,200,000 | 320,000  | 320,000    | 2,560,000 |
| 123 |                   |       |   | 3,700,000 | 370,000  | 370,000    | 2,960,000 |
| 137 |                   |       |   | 3,300,000 | 330,000  | 330,000    | 2,640,000 |
| 84  | 주방상판, 주방벽체        | 세라믹타일 | 리바트<br>(마블 그레이 매트[무광])                                      | 4,800,000 | 480,000  | 480,000    | 3,840,000 |
| 106 |                   |       |   | 4,900,000 | 490,000  | 490,000    | 3,920,000 |
| 123 |                   |       |   | 5,900,000 | 590,000  | 590,000    | 4,720,000 |
| 137 |                   |       |   | 5,800,000 | 580,000  | 580,000    | 4,640,000 |
| 84  | 바닥마감 (거실, 주방, 복도) | 포세린타일 | 대동산업  | 1,800,000 | 180,000  | 180,000    | 1,440,000 |
| 106 |                   |       |   | 2,000,000 | 200,000  | 200,000    | 1,600,000 |
| 123 |                   |       |   | 2,400,000 | 240,000  | 240,000    | 1,920,000 |
| 137 |                   |       |   | 2,600,000 | 260,000  | 260,000    | 2,080,000 |

- 마감재의 사양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함.
- 바닥 포세린타일(거실, 주방, 복도 등) 유상옵션 선택 시 타일 줄눈 색상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나누기 및 줄눈두께가 변경될 수 있음.
- 세라믹타일의 패턴 및 결(베인)은 규칙적이지 않고, 랜덤하게 시공됨.
- 세라믹타일 주방 상판 및 벽체(유상옵션)는 이음매가 육안상 보일수 있으며, 줄눈 나누기 및 두께는 변경될 수 있음.

3) 가전/가구 유상옵션 선택품목

[단위 :원 / VAT 포함]

| 주택형 | 품목                   |                                   | 제조사 및 모델명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
|     |                      |                                   |                         |           | 계약시      | 2023.03.20 | 입주지정일     |
| 전타입 | 빌트인 냉장, 냉동,<br>김치냉장고 | 비스포크(냉장고:380ℓ, 냉동고:318ℓ, 김치:319ℓ) | 삼성전자 (코타,코타화이트,코타차콜)    | 5,500,000 | 550,000  | 550,000    | 4,400,000 |
|     |                      | 오브제(냉장고:384ℓ, 냉동고:321, 김치:324ℓ)   | LG전자 (네이처,네이처그레이,네이처블랙) | 5,500,000 | 550,000  | 550,000    | 4,400,000 |
| 전타입 | 기능성 오븐               |                                   | LG전자 (MZ385EBT)         | 500,000   | 50,000   | 50,000     | 400,000   |
| 전타입 | 식기세척기                |                                   | SK매직                    | 800,000   | 80,000   | 80,000     | 640,000   |
| 전타입 | 3구 인덕션               |                                   | SK매직 (IHR-B310E)        | 600,000   | 60,000   | 60,000     | 480,000   |
| 전타입 | 현관 중문 (3연동 슬라이딩 도어)  |                                   | KCC                     | 1,500,000 | 150,000  | 150,000    | 1,200,000 |
| 84  | 안방 붙박이장 (슬라이딩<br>도어) | 수납형                               | 리바트                     | 3,800,000 | 380,000  | 380,000    | 3,040,000 |
|     |                      | TV형                               | 리바트                     | 3,800,000 | 380,000  | 380,000    | 3,040,000 |
| 106 |                      | 수납형                               | 리바트                     | 4,000,000 | 400,000  | 400,000    | 3,200,000 |
|     |                      | TV형                               | 리바트                     | 4,000,000 | 400,000  | 400,000    | 3,200,000 |
| 123 |                      | 수납형                               | 리바트                     | 4,200,000 | 420,000  | 420,000    | 3,360,000 |
|     |                      | TV형                               | 리바트                     | 4,200,000 | 420,000  | 420,000    | 3,360,000 |
| 137 |                      | 수납형                               | 리바트                     | 4,200,000 | 420,000  | 420,000    | 3,360,000 |
|     |                      | TV형                               | 리바트                     | 4,200,000 | 420,000  | 420,000    | 3,360,000 |

-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자재, 하드웨어 등의 사양이 동질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가전제품 옵션은 세대 내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는 유상옵션 선택품목을 보여드리기 위해 타입별로 상이한 브랜드 제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선택하는 브랜드 제품에 따라 마감종류, 색상, 손잡이형태, 설치방법 및 설치형태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빌트인 주방가전 미 선택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며, 비치하는 가전의 크기에 따라 주방쪽으로 가전 일부가 돌출될 수 있음.

- 빌트인 가전의 전원 연결을 위해 가구 내 전선 인출구가 타공 될 수 있음.
- 빌트인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는 제조사에 따라 표면마감이 상이하오니 견본주택에서 참조하시기 바람.
- 안방 불박이장 선택시 날개벽이 삭제되며, 파우더장과 연결 시공되며, 침실1 파우더장 선택형에따라 수납형태와 양이 상이하오니 견본주택에서 확인 후 선택 바람.
- 현관중문 선택시 신발장 가구구성과 길이가 달라질 수 있음.
- 슬라이딩도어는 내부창호로서 기밀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음.
- 각 실별 옵션형 평면 선택여부에 따라 가구구성 및 크기 등이 상이하오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각 실별 옵션형 평면 선택 유무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   |
|------------|------|------------------|-------------|--|
| 추가 선택품목 대금 | 하나은행 | 591-910058-70904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입금시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br>ex)103동702호 홍길동 → 1030702홍길동 |

-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은 상기계좌로 납부하여야 함.(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추가 선택품목(옵션) 비용은 상기 납부계좌로 반드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견본주택 현금수납 불가) 하시기 바람, 입금 시 계약할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예 : 103동702호 홍길동 → 1030702홍길동)
- 옵션 품목은 시행수탁자인 (주)하나자산신탁과 무관하며, 시공사인 (주)삼정이앤시와 별도 계약을 통해 진행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람.(시행수탁자인 (주)하나자산신탁은 대리사무계약에 따른 계좌 관리만 진행함)
- 지정된 추가 선택품목(옵션)의 중도금 및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람,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선택품목(옵션) 대금 납부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선택품목(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음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시행위탁자 및 시행수탁자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추가 선택품목의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입주 시 개별 납부)
- 추가 선택품목을 납부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확인서 등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제출하시기 바람.(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
- 상기 계좌와 아파트 및 발코니 공급대금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바람.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음.

**IX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시기 바람,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통사항**

- 본 아파트의 분양대금은 위탁자인 (주)대상공원개발사업단과 창원시와의 '창원시 대상공원 민간특례사업 협약'에 따라 공원조성 사업 관련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고 조성된 대상공원을 창원시에 기부채납 예정이며 수분양자는 배타적 사용권한을 주장할 수 없음.
- 당 사업장은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대상지로 공동주택 외부에 표현된 빅트리, 빅브릿지, 맘스프리존, 셸파크, 산책로, 주차장 등이 근린공원 내에 조성될 예정이나 위치, 규모, 디자인 등은 시공 여건 또는 인허가청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동측 소로1-14호선(보행자도로)과 소공원, 서측 주출입구와 남측 부출입구는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인허가 사항으로, 이는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인허가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특히, 소로1-14호선 경계부는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단지내 화단(조경식재) 설치 및 수고가 높은 수목을 식재할 계획임.
- 소공원은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공원에 인접한 주동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공원의 레벨과 형태는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외곽에 외부와의 레벨차이 극복을 위한 각종 구조물(산책, 옹벽 등)이 계획되어 있으나 시공 여건, 인허가청과의 협의를 통해 설치방식, 형태,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세대의 경관이 변경될 수 있음.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창원도시관리계획(공원:대상공원)준공과 연동하여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 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창원 대상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부지"로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청 발굴제도과-4925호(2019.04.26.)로 문화재보존대책을 통보받은 지역이므로 시굴조사 및 표본조사에 따른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 유물이 등이 발굴될 경우 공사 중단 또는 지연으로 인해 입주가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지연 시 별도 안내할 예정임.
- 본 아파트 토지중 조달청과 협의된 무상귀속토지 2필지(성산구 내동 515-44번지, 성산구 외동 932-8번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창원시(하천과)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양도)됨.

- 본 공고문에 미기재된 내용 및 오기된 내용에 대하여는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도 있음.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홍보물(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 오타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건본주택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건본주택을 확인하시어 계약시 착오 없으시길 바람.
- 카탈로그, 홍보물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입면디자인(저층부 조적 및 도장디자인 등), 줄눈, 조경, 색채, 물딩, 창호, 옥상장식물, BI 위치와 크기 및 개소, 필로티, 외부계단 등 각종 시설물의 디자인/마감사양, 동선체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이미지컷 및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음.
-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건본주택은 사업승인변경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주택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건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평면도 및 시방서는 건본주택에 열람 가능토록 비치되어 있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전염병 등)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람에 그로 인한 입주자연보상금 등은 발생하지 않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람에,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동주택은 창원국가산업단지내 위치하고 있어 인근 공업지역 및 골프연습장, 주유소, 간선도로 등과 인접하고 있어 정주환경이 취약하므로 입주시 발생할 수 있는 대기, 소음, 진동, VOC, 악취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예상되므로 수 분양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이로인한 민원 및 손해배상 등 청구할 수 없음.
- 인근 골프연습장 타격소음 저감계획에 따른 골프연습장 경계부에 방음벽이 설치됨.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표등본 포함)으로 통보하시기 바람에, 이에 대한 통보 누락으로 인한 당첨자의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일절 책임지지 아니함.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 **사업추진 여건에 따른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 등으로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 내 타토지의 용도, 위치, 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기타공용면적과 계약면적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지하주차장면적은 상호간 변경될 수 있음.
- 기타공용면적과 계약면적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공동시설은 개별시설 상호간 변경될 수 있음.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 및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주택법시행규칙 제13조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로 조정대상지역인 **창원시 성산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함.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함.
- 본 단지는 기반시설 조성공사 및 아파트 단지공사, 입주 후 주변시설 공사로 인하여, 소음, 분진, 생활 편의시설 미비, 공사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유의사항을 명확히 숙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에, 본 유의사항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아니함.
- 공급대상의 약식표기는 청약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시한 참고용이며, 청약신청시에는 반드시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함.
- 공급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m<sup>2</sup>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람.(평형 환산 방법 : 형별면적(m<sup>2</sup>) x 0.3025)
- 계약시 체결된 건물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한다. 단, 이 경우 정산금에 대하여 이자를 적용하지 않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한다.
  - ①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 ② 면적을 계산상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 차이로 인해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의 합계는 오차가 생길 수 있음.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동주택은 근린생활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로 소음, 기타 외부인 통행 등으로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
- 주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향, 인근 시설물 및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판매시설 배치구조 및 층·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접부지 건축물의 건립으로 조망, 사생활 침해, 소음 및 조명에 따른 눈부심 발생으로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 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동주택은 건축법 및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의 입면 장식,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동·호수 별 위치에 따라 상이 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주, 부 출입구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차량 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각종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입주시 이삿짐은 관리사무소에 사전 신고 후 엘리베이터로 운반하여야 하며, 고가사다리 차량 등의 진입이 제한될 수 있음.
- 공동 사용시설(단지 내 커뮤니티, 운동시설, 조경식재, 도로포장 등)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입주자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함.
- 본 아파트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VII-0.239g에 해당함.
- 당 사업지 브랜드는 시공사의 브랜드관리 정책에 따라 향후 일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입주예정자 참여형 감리보고제 시행에 따라 분기별 감리보고 시 입주예정자는 참여가 가능함.
- 단지 인근의 각종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의 기반시설은 인허가나 정부시책에 따라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한 바, 해당 인허가청 및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행사 및 시공사와는 무관함.
-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 이후에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자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전항의 경우 입주 이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책임짐.

## ■ 단지여건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입주절차

- 계약자는 공급대금 및 면체료를 기일 내에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한 제반 서류를 제출한 후 입주일이 명시된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함.
- 계약자는 입주 시 관리예치금(선수관리비)을 납부하여야 함.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입주, 잔금완납 및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단,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에는 입주증 발급일 또는 키수령일로부터 관리비를 부담해야 함.
- 본 아파트의 입주일은 공사 진행결과에 따라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도래된 중도금과 미도래된 잔금은 실입주일 이전에 납부해야 함. (단,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함.)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는 준공 후 입주자의 원활한 입주 업무 지원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입주업무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최대 5개월, 하자보수 업무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최대 27개월)동안 입주지원센터(가칭) 및 현장A/S센터(가칭)로 사용하며,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 및 시설 이전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며, 관련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함.

### ■ 계약일반

-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시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 및 등기절차에 협조하여야 하고, 해당분 양주택의 담보평가결과 담보부족분이 발생할 때에는 담보부족분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액을 계약자가 책임지고 대출은행에 상환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단지모형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단, 그 차이가 현저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계약 제2조 및 제3조에 따름.
- 본 주택의 계약시점에 따라 매도인의 분양조건(분양가격, 옵션제 등)은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추후 소급적용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결정되되, 사업주체와 계약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으로 함.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이후에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자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입주 이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책임짐.

- 외국인(법인·단체포함)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가.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구입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 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를 한다. (단, 공급계약이나, 매매는 부동산거래신고로 같음하고 증여, 교환 등만 해당함)

나.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함.

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를 함.

라.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치고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함.

-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분양대금 납부안내 등을 위한 휴대폰문자서비스(SMS) 수신에 동의하며, 계약자가 사업주체에게 번호 변경 미고지 및 계약자의 휴대폰 수신 상태 문제로 인한 SMS 미수신의 책임은 사업주체가 지지 아니함.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가산세) 및 세세공과금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함.

- 부동산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인지(기재금액 1억원 이상~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를 계약서 작성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함.

#### ■ 설계일반

- 기본주택에 전시되는 모형 및 이미지(조감도 등)상 표현된 단지명 및 비는 실 시공 시 현장 상황 및 인허가 기관의 심의협의를 따라 위치, 개소수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조망설계에 따라 일부 세대에서는 야간에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음.

- 당 단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건립되는 공동주택으로 건축법상 일조권 적용을 받아 적법하게 계획되었으나 주동 형태로 인한 세대별, 위치별로 일조권 및 조망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고 추후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기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계약 시 제시된 공급안내서를 포함한 세대평면도, 모형 등의 각종 인쇄물(CG(조감도, 투시도) 및 면적, 치수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외관, 옥탑장식물 형태 및 사이즈, 색채는 측정결과, 각종 심의 결과(건축위원회 심의 등), 불합리한 설계의 개선 및 표현 오류, 오기의(공사) 등으로 정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구조·성능·제품의 사양은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홍보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 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아파트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어 눈부심, 세대의 조망 등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외부의 마감재,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 계획은 추후 관계 인허가청의 협의과정 등에서 마감재, 색채 및 경관조명이 변경되어 질 수 있으니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기본주택에 비치된 사용승인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시공은 사용승인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됨.

-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함.

- 천연자재(석재, 무늬목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기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 색상, 베인이 상이할 수 있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하며, 천연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경우 본 시공시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나 자연적 패턴이 있을 수 있음(무늬, 형상, 색상차이 등)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전염병 등)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될 수 없으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특기시방서에 별도의 시공기준이 없는 경우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시공계획서 또는 승인자재 제조사의 시공기준에 따름.

- 단지내 조경 식재 및 시설물, 포장 등 추후 인허가 및 실시설계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인증표시는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체 및 부속물(디지털도어록/말발굽 등)의 임의설치/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사가 책임지지 아니함.

- 현장 상황에 따라 추후 단지명이 변경될 수 있음.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내용 이동통신 장비 및 중계기는 지하주차장 및 102, 104, 108, 110, 113, 116동 지붕층에 설치됨. (실 시공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11동 옥상에 소방고가수조가 설치될 예정이며, 소방고가수조의 위치 및 형태 등은 인허가 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제한 및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 주변현황 / 단지배치

- 하기 사항에 따라 일조·조망·사생활 침해, 소음·빛공해·분진·냄새·진동 발생 등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함.

- 1) 조정식재 및 조정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일부 일조, 조망 침해
- 2) 가로등, 야간 조명,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과 인접세대 소음, 빛공해, 인접주동디자인에 의한 눈부심, 사생활권 침해 등
- 3) 단지 주변 도로, 통행로 인도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빛공해, 일조·조망·사생활 침해 등
- 4) 단지 배치 상 쓰레기 분리수거함, 재활용 창고, 급배기시설(환기구 등),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에어컨 실외기 및 근린생활시설 입점자 설치분의 주방배기구 인접으로 인한 소음, 냄새 및 해충 등 환경권 침해
- 5) 근린생활시설 상부 인접세대 소음,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
- 6) 주변 건축물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단지 내 휴게공간·필로티·어린이놀이터·옥상 텃밭 및 산책로·드라이에어리어(D/A), 기타 부대시설 등의 설치로 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 소음 발생 등 환경권 침해
- 7) 단지 배치계획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 위치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따라 소음 발생, 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 등 환경권 침해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건본주택, 카탈로그,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 등에 표시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공원, 녹지, 박물관, 학교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에 접해있거나 단지주변에 있는 시설(도로, 공원, 보행로 등)은 시공범위가 아니며, 해당 시설 및 지형은 상위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된 계획레벨(도로, 공원, 보행로 등)에 따라 실시공사 단지레벨 및 길이, 형태, 종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시공범위 외 기반시설의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 하여 확인하여야 함.)

- 지구단위계획 등 상위계획에 의해 설치되는 공지 및 공공보행로 등은 외부인이 이용 및 통행할 수 있음.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어린이놀이터의 놀이시설물 및 파고라 등의 크기, 형태는 추후 실시설계 진행에 따라 변형될 수 있음.

- 주차장 진입을 위한 램프의 마감재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학생배치와 관련하여 초등학생은 인근 내동초등학교에 배치되고, 중학생은 제1학교군(팔룡중, 봉림중, 경원중, 봉곡중, 반림중, 명서중, 창원중앙중, 도계중, 창원중, 반송중, 반송여중, 창원여중, 명곡여중) 내 배치되고, 고등학생은 창원(의창구, 성산구) 내 기존 고등학교에 배치됨.

- 당해 지구 내 교육시설 등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학생수용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학생배치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 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창원교육지원청 등 해당 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함.

- 단지 동쪽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서측에 위치한 한국폴리텍대학(창원캠퍼스) 등에 의한 소음, 조명, 프라이버시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고, 단지 남측의 창원국가산업단지내 대기오염물질 (유해대기오염물질 포함)을 배출하는 사업장(대기배출시설 1~5종, 약취배출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환경피해(대기질 등)가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해당 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 비상차로는 외부 도로와 바로 연결되고 진출입부(보행자출입구)에 이동식 볼라드 설치가 계획되어 있으며, 소방차, 통학차량 및 기타 서비스 차량의 이용 시, 별도의 출입 관리가 필요함.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상황에 따라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각 세대 거실 및 일부세대 침실, 주방 등의 이삿짐 운반시 사다리차량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다른 창호를 이용하거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를 어기고 사다리차량을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입주자에 있으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고 확인하여야 함.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차량출입구 통행 개선을 위하여 차단기가 추가설치, 삭제, 위치이동 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도로폭 확대 및 보행로폭 축소될 수 있음.

#### ■ 아파트주동 / 공용부

- 하기 사항에 따라 일조·조망·사생활 침해, 소음·빛공해·분진·냄새·진동 발생 등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후 계약하시기 바람.

- 1) 건축 외부장식물에 의한 조망 및 일조 침해
- 2) 지하주차장 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제연헬륨/우수조/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의 송풍기, 실외기 등에 인접한 세대의 소음, 냄새, 진동 발생 및 돌출물/시설물(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태양광 집광판, 피뢰침 등) 등으로 인한 일조, 빛공해, 조망간섭 등의 환경권 침해
- 3) E/V 운행에 따른 인접 침실 소음, 진동 등 발생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

- 단지 출입구의 문주는 형태 및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저층부 세대의 경우 조적/타일 마감으로 인해 외부창호가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됨.

- 단지 커뮤니티(휘트니스, 독서실 등)시설 중 불박이가구(락커, 파우더장) 등은 무상제공 되나, 이동가구(테이블, 의자) 등은 제공 되지 않으며, 설계 및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 옥탑, 옥상 및 지하주차장 신축준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미시공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해당부위 백업재 및 코킹은 시공하지 아니함.

- 일부 아파트 지붕 및 지상 일부구간에 태양광 집광판, 경관조명, 공청TV안테나,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 등이 설치될 수 있고 상세계획(설치면적, 위치, 높이,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되며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실 시공시 연돌효과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공용부 창호의 실시 위치, 개소, 사양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외 공용부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관련 시설물은 사업승인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통신 단자함/전기분전반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트랜치시공 시 시공부위의 주차구획은 트랜치폭을 포함하며, 트랜치가 측면, 배면에 시공될 시에는 주차라인마킹은 하지 않음.
- 엘리베이터홀, 부대시설의 경량천장을 시공부위에 천장틀의 처짐 등 기능상, 안전상 지장이 초래 되지 않을 경우 마이너한넬보강은 제외함.
- 지하주차장은 인허가 도서에 준해 설치되며, 해당 천장고 초과 차량은 출입할 수 없음.

| 구분    | 주차장 차로의 높이              |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
|-------|-------------------------|-------------|
| 지하 1층 | 2.7m (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 | 2.7m        |
| 지하 2층 | 2.3m (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 | 2.3m        |

- EPS, TPS, AD/PD, PIT, ST, AV 등의 내부벽체(ALC(경량콘크리트블록), 조적벽체, 콘크리트벽체)는 초벌기장 시공을 제외하며, 해당구간의 조적벽체 미장은 E/V 홀 또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시공함.
- 시멘트 몰탈 마무리두께는 15mm 내외로 하며 바탕면에 따라 오차범위 5mm를 포함.
- 창호는 공사여건에 따라 ±50mm범위 내에서 규격이 변경될 수 있음.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창의 개폐여부 및 방식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홀, 지하층 통행로 등 공용부의 벽체타일 및 세대 아트월은 예폭시 떠붙임 공법으로 시공 시 6~9지점(600\*600기준) 지지로 시공함.
- 무늬코트 도장 마감인 경우, 도면 지정된 부위에 수성 페인트 도장 후 무늬코트도료를 1회 스프레이 도장함. (상도코팅은 수성으로 시공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무광으로 시공 될 수 있음.)
- 주동 공용홀 창호는 법적 이격거리 반영에 따라 주동별로 규격이 상이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모형 및 각종 이미지(조감도 등)에 표현된 시설물일체는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주동 지붕에는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되며,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된다. 태양광 집광패널의 설치 위치에 따라 옥상에 설치되는 시설물 (옥상장식물 등)의 위치,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쓰레기분리수거장은 주동에 인접하여 설치되므로 이로 인해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접근이 예상되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시설 및 상가의 실외기가 옥외에 설치되어 이에 인접한 세대에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도서관, 골프장 등 주민공동시설 내부 레이아웃은 공간개선을 위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엘리베이터와 인접된 세대에는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축물의 높이가 60m 초과시에는 지면에서 건축물의 높이 5분의4가 되는 지점에 돌침형 피뢰침이 설치되어 건물외벽(특정세대 발코니앞) 미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환기 노출될 수 있음.
- 우편물 보관함 및 무인택배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최상층 및 지하주차장, 지상 일부구간에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의 침해 받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및 각 동 옥탑, 지상 일부구간에는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각종 인입(상·하수도, 오수, 도시가스, 전기 등)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기(스위치, 콘센트, 월패드, 분전반, 통신단자함 등) 설비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건물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설비 등이 설치 될 예정이며, 기기 작동 시 하부 세대에 소음, 냄새, 그늘음, 진동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 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주방 배기를 위한 배기덕트 및 환기시설이 세대 인근에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냄새, 진동 발생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위세대

- 동별,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 침해가 발생하는 세대가 존재하며 수분양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차후 여하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민원의 제기는 불가함.
- 발코니에는 상부 배수배관이 천정 내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형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함.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세대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제외 품목임.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본 공사 및 하자보수 시 동등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 스피커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세대 타입별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그 설치 위치가 결정됨.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구의 크기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실내 환기성능을 고려하여 위치 및 개소가 조정될 수 있음.
- 마감재의 사양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함.
- 본 공사시 타일, 세라믹타일(거실 벽, 주방 벽/상판), 엔지니어드스톤 및 천연가공석(거실 벽, 주방 벽/상판, 욕실 벽/바닥, 현관/발코니 바닥 등)의 패턴 및 결(베인)은 규칙적이지 않고 랜덤하게 시공되며 색상, 줄눈 나누기 및 간격이 다를 수 있음.
-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세라믹타일(거실 벽, 주방 벽/상판), 엔지니어드스톤, 천연가공석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단차, 코너, 마감재접합부, 패턴 등은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수전류, 욕실 마감자재(양변기, 세면기, 휴지걸이, 수건걸이, 코너선반 등), 욕실FAN 등의 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 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며, 비치하는 냉장고 크기에 따라 냉장고 일부가 돌출될 수 있음.
-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내부공간 및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음.
- 가전 기기 등 설치 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과 같으며 그 보다 큰 가전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할 수 없음.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은 상이 할 수 있음.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 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 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함.
- 본 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음.
- 주방싱크장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됨.
- 등기구 보강은 “원형 매입등 φ800, 사각 매입등 800\*800” 규격 이상에만 해당됨.
- 유상옵선품목(가구, 가전, 평면선택 등)은 반드시 사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함.
- 천장형 에어컨은 유상옵선품목으로 미선택 시 전 평형에 냉매배관 2개소(거실 스탠드형 기준 1개소, 안방 벽걸이형 기준 1개소)가 제공되며, 천장형 에어컨을 위한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은 설치되지 아니함.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 난간은 확장형 기준이며,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 시 일부 구간에 난간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 욕실, 현관 등은 바닥 단차설계가 적용되며, 출입문 개폐 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외벽 측벽 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 시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본 공사시 각종 유리도어(슬라이딩, 여닫이, 픽스 등)의 각종 디테일(프레임, 레일,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 우물천장은 천정내 설비배관 등에 의하여 천정과 및 길이, 크기,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커튼박스 길이가 변경될 수 있음.
- 비확장세대의 발코니 중 외기에 면하는 일부 벽체는 결로방지용 단열재가 설치되어 실제 발코니 사용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며 벽면 및 천장에 단열 설치로 인한 단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 사양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 시 주방 발코니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및 덕트가 노출될 수 있음.
- 각 세대별 발코니 확장/비확장형 선택 및 옵션형 평면 선택 유/무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상부세대가 발코니 비확장형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은 본 공사시 마감재 설치 등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됨.
- 각 세대(비확장형 세대 포함)의 발코니 중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계약자의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의에 의거 계약함을 확인함.
- 본 공사시 코킹 시공 부위 및 색상은 달라질 수 있으며, 욕실 천정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음.
- 침실 반침장, 안방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거울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에는 마루, 타일, 세라믹타일, 엔지니어드스톤, 천연가공석,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주방가구의 경우 후면/천장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아니함.
-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졌더라도, 자재특성(은 성분)상 산성, 알칼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욕실 환기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책임짐.
- 계약자가 임의로 전유세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행하여 하자 또는 성능불량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으며,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침실, 거실, 주방의 조명스위치는 이동, 취침준비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 소등되는 회로가 몇 초간 지연 후 소등되는 조명스위치가 설치됨.

- 세대 내 유리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위치별로 특성이 다른 유리가 설치될 수 있음.
- 철제 방화문(현관 등)은 방화성능을 고려하여 본공사시 하부씰, 상하좌우 프레임형상 및 재질이 변경됨.
- 하이오티(Hi-oT) 및 보이스홈 서비스의 경우 이동통신사/포털사/제휴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 및 사용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 하이오티(Hi-oT) 및 보이스홈 가전기기 제어서비스는 하이오티 연동된 IoT가전기기를 구매하고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 제조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제한 및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하이오티(Hi-oT) 및 보이스홈 서비스는 성능 개선이나 입주 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플랫폼 운영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의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등의 사유로 조명기구, 월패드, 분전함, 콘센트, 소방설비 및 배선기구류 등이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갯수, 설치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음.
- 실외기실 갤러리(루버) 창 프레임 및 갤러리의 색상은 외부 색채 디자인에 따라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환기장비가 실외기실 천장에 노출 설치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작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환기장비에는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HEPA필터가 설치되며, 필터는 연 1~2회 교체를 권장한다. 사용정도에 따라 교체주기가 다소 상이할 수 있다. 장비설치외 1개의 필터가 입주 시 제공되며, 이후 필터구입 및 교체는 입주자 분임.
- 환기장비 가동시 욕실 FAN이 연동 가동되는 시스템으로, 욕실 FAN을 사용자가 가동하지 않더라도 환기장비 연동으로 가동되어 작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냉난방겸용 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시설이며, 본 시공 시 냉방전용 시스템에어컨이 유상옵션으로 제공됨.
- 난방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개별 보일러가 제공되며,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화장실 천장에 급수를 위한 분배기 및 상부층 배수배관이 설치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천장에 설치됨.
- 각 세대 침실 내에 세대분전함 또는 분전함, 세대단자함의 세대통합분전함이 설치되며, 시공과정에서 위치 및 마감이 변경 될 수 있음.
- 스마트폰 인증으로 공동현관 자동문 출입이 가능한 스마트폰 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보조 출입키(카드형 RF키)는 세대 당 2개가 지급 됨.
- 스마트폰 키 및 스마트폰 자동 주차위치 저장 시스템은 스마트폰의 Bluetooth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어야 하며, 일부 스마트폰 기기에서는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스마트폰 자동 주차위치 저장 시스템은 세대별 등록된 차량을 지하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사용 가능함.
-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됨.
- 스마트 주방거치대가 설치 될 경우 후면에 전원 및 통신단자용 통합콘센트가 주방 타일면에 노출 설치되며, 전원선 및 통신케이블이 노출됨.
- 스마트 주방거치대가 설치 될 경우, 본 공사시 가스배관 위치, 주방가구 악세서리 배치에 따라 스마트 주방거치대 및 콘센트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음.
- 우물천정과 갈레받이는 본공사시 하자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PVC 위 랩핑 또는 금속 위 도장으로 시공될 수 있음.(견본주택 시공자재와는 상이할 수 있음)
- 각 세대 현관문 및 실외기실 도어, 그릴의 도장, 색상 및 디자인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주방에 가스배관, 렌지후드 환기덕트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일부 가구의 깊이가 줄어들 수 있으며,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
- 욕실 벽체 등 시멘트 몰탈 떠붙임 공법의 뒷채움은 80%로 시공함.
- 주방 상부장 윗쪽으로 가스 배관 등이 노출 될 수 있으며, 사용상의 문제가 없는 한 하자 사항으로 민원 / 하자 접수를 할 수 없음.
- 대피공간 없이 발코니(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관계법령에 따라 화재 등 긴급 피난시 상부세대에서 하부세대로 하향식 피난구가 개방되고, 사다리가 내려와서 아래 세대로 피난이 되는 구조)가 설치되는 경우, 피난구의 설치 위치는 층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최하층 세대는 하향식 피난사다리 설치가 제외됨.
-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는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가 필요하며,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하여 항시 실외기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증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인·허가상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시공자가 책임지지 않으며, 또한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소음 및 누수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평면의 유상, 무상옵션 선택 시, 공간규격, 디자인, 색상, 마감재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설비 배관상의 이유로 커튼박스의 크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각종 도어 및 창호류, 난간의 사양(유리사양, 창틀 디자인, 손잡이, 창호크기, 루버형태, 재질, 색상, 제조사, 열림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보조주방의 천장마감재 및 천장고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마감 상황(타일 및 천연가공석의 줄눈나누기, 도배와 가구 설치내용 등)과 제품의 품질수준 유지를 고려하여 월패드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 온도조절기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확장 발코니의 일부벽체에는 결로방지용 단열재 설치 등에 따라 발코니 사용면적이 축소될 수 있고, 벽면 및 천장에 단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안방 발코니 확장 선택 세대의 경우 안방 앞 우수배관 등의 설치된 설비공간의 소음이 안방으로 전달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픽처레일에 사용되는 와이어, 고리 등은 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됨.
- 세대내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장소별 색온도가 상이할 수 있음.
- 타일 및 천연가공석의 줄눈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세대단자함, 세대분전함, 배선기구,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별 세대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기간사업자에게 제공 요청하여야 함.
- 건본주택 각 타입에 연출되어 있는 스포트라이트, 스탠드 조명 및 펜던트는 전시용으로 실 시공시 설치되지 않음.
- 전열교환 환기장비가 실외기실/발코니 등 천정에 노출 설치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작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방 상부장 하부의 간접조명은 가스배관, 가스차단기 등의 설치로 분절, 축소될 수 있음.
- 욕실2 샤워부스 선택형 선택시 욕실장 크기가 소폭 감소하며, 양변기와 세면대 간격이 좁아짐.
- 공용부 수납선택형 선택시 현관팬트리(현관마감(타일), 복도 및 주방팬트리는 공용부 마감과 동일한 사양으로 바닥 시공됨.
- 알파룸 선택형 선택시 방문은 목창호로 설치되며, 방내부에 시스템가구는 설치되지 않음
- 침실1 욕실에 설치되는 욕실폰은 벽체 및 욕실 가구 마감에 따라 휴지걸이 일체형 또는 분리형으로 설치되며 가구장에 설치 시 가구장 후면에 노출됨.

■ 설계관련 주요 고지 사항

- 공급계약 체결 이후 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건본주택에 설치된 배치도 및 평면도, 모형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본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음.
- 도로 인접 및 주변 부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건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람.
-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함.

부대복리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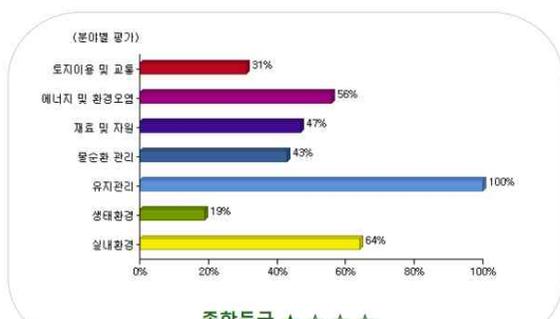
어린이 놀이터 4개소, 유아놀이터 1개소, 주민운동시설(배드민턴장 2개소, 체력단련장 1개소), 조경특화시설(잔디마당, 수변정원, 테마쉼터),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 운동시설(실내), 주민 공동시설(실내) 등

■ 친환경주택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 의무사항                       |                                  | 적용여부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
|----------------------------|----------------------------------|-------------------------------------|---|
| 건축부문 설계기준<br>(제7조 제3항 제1호) | 단열조치 준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
|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
|                            | 방습층 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
| 기계부문 설계기준<br>(제7호 제3항 제2호)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 준수   |
|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
|                            |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적용                                  | 전동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
|                            |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 적용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
|                            |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적용                                  | 세대 내 설치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
|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적용                               |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   |
| 전기부문 설계기준<br>(제7조 제3항 제3호) |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
|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
|                            | 조명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
|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적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공동주택 성능등급의 표시
- 녹색건축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는 예비 인증으로서 공사 중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비 인증서가 변경되는 경우 공동주택성능등급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h3 style="margin: 0;">녹색건축 예비인증서</h3>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50%;">건축물 개요</th> <th style="width:50%;">인증 개요</th> </tr> <tr> <td> <b>건축물 명 :</b> 대상공원 특례사업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br/> <b>건축주 :</b> (주)대상공원개발사업단<br/> <b>준공(예정)일 :</b> 2025.07.30.<br/> <b>주소 :</b>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내동 산33-1번지 외 77필지<br/> <b>층수 :</b> 지하2층, 지상33층<br/> <b>건축면적 :</b> 358,961.8222㎡ (평가면적: 356,570.6546㎡)<br/> <b>건축물 용도 :</b> 공동주택<br/> <b>실제자 :</b> (주)마루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td> <td> <b>인증번호 :</b> 2022-075<br/> <b>인증기관 :</b> 한국부동산원<br/> <b>유효기간 :</b> 2022.03.16. ~ 사용승인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날<br/> <b>인증등급 :</b> 일반(그린4등급)<br/> <b>인증기준 :</b> 녹색건축 인증기준<br/> <b>발급규정 :</b> 국토교통부시 제 2019-764호, 환경부고시 제2019-248호, 인증기준 운영세칙(2020.04.30.)         </td> </tr> </table> <p>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일반(그린4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p><b>중합등급 ☆☆☆</b></p> </div> <p style="text-align: right;">2022년 03월 16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한국부동산원장</p> <p style="font-size: 0.8em;">*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p> | 건축물 개요  | 인증 개요                     | <b>건축물 명 :</b> 대상공원 특례사업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br><b>건축주 :</b> (주)대상공원개발사업단<br><b>준공(예정)일 :</b> 2025.07.30.<br><b>주소 :</b>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내동 산33-1번지 외 77필지<br><b>층수 :</b> 지하2층, 지상33층<br><b>건축면적 :</b> 358,961.8222㎡ (평가면적: 356,570.6546㎡)<br><b>건축물 용도 :</b> 공동주택<br><b>실제자 :</b> (주)마루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b>인증번호 :</b> 2022-075<br><b>인증기관 :</b> 한국부동산원<br><b>유효기간 :</b> 2022.03.16. ~ 사용승인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날<br><b>인증등급 :</b> 일반(그린4등급)<br><b>인증기준 :</b> 녹색건축 인증기준<br><b>발급규정 :</b> 국토교통부시 제 2019-764호, 환경부고시 제2019-248호, 인증기준 운영세칙(2020.04.30.) | <h3 style="margin: 0;">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h3> <p>1. 공동주택명 : 대상공원 특례사업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br/>         2. 신청자 : (주)대상공원개발사업단<br/>         3. 대지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내동 산33-1번지 외 77필지<br/>         4. 성능등급</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colspan="2">가. 소음 관련 등급</th> <th colspan="2">다. 환경 관련 등급(계속)</th> </tr> <tr> <td>1. 방향중적응 차단능력</td> <td>★★★★</td> <td>17. 연계된 녹지축 조성</td> <td>-</td> </tr> <tr> <td>2. 중량중적응 차단능력</td> <td>★★</td> <td>18. 파면외곽 녹지축</td> <td>★</td> </tr> <tr> <td>3. 제1차 간격벽의 차음성능</td> <td>★★★★</td> <td>19. 생활민원물</td> <td>★</td> </tr> <tr> <td>4. 공동주택으로 밀폐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td> <td>★</td> <td>20. 비오물 조망</td> <td>-</td> </tr> <tr> <td>5. 화상열 급배수 소음</td> <td>★</td> <td>21. 엘리베이터 오정동질 저감용 배관의 적용</td> <td>★★★</td> </tr> <tr> <td></td> <td></td> <td>22. 라면 용기상징 확보</td> <td>-</td> </tr> <tr> <td></td> <td></td> <td>23. 라면용기상징 표시 수준</td> <td>★★</td> </tr> </table> <p>나. 구조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성능항목</th> <th>성능등급</th> </tr> <tr> <td>1. 내구성</td> <td>★★</td> </tr> <tr> <td>2. 가연성</td> <td>★</td> </tr> <tr> <td>3. 수리용이성 권용부분</td> <td>★</td> </tr> <tr> <td>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td> <td>★</td> </tr> </table> <p>다. 환경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성능항목</th> <th>성능등급</th> </tr> <tr> <td>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td> <td>-</td> </tr> <tr> <td>2. 과도한 지하채광 시설</td> <td>-</td> </tr> <tr> <td>3. 토공사 절실도량 최소화</td> <td>-</td> </tr> <tr> <td>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td> <td>-</td> </tr> <tr> <td>5. 에너지 절감</td> <td>★★★★</td> </tr> <tr> <td>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계획 수립</td> <td>★</td> </tr> <tr> <td>7. 산·생활에너지 사용</td> <td>-</td> </tr> <tr> <td>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td> <td>-</td> </tr> <tr> <td>9. 고효율 보일러를 위한 축열용량의 사용 금지</td> <td>★</td> </tr> <tr> <td>10. 생활물처리 재활용(2차) 사용</td> <td>★★★★</td> </tr> <tr> <td>11. 저탄소 구매의 사용</td> <td>★★</td> </tr> <tr> <td>12. 친환경소재의 사용</td> <td>★</td> </tr> <tr> <td>13. 유해물질 차단 소재의 사용</td> <td>★</td> </tr> <tr> <td>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td> <td>-</td> </tr> <tr> <td>15. 재활용가능자재의 보편성 설치</td> <td>★★★★</td> </tr> <tr> <td>16. 고품질 콘크리트 사용</td> <td>★</td> </tr> <tr> <td>17. 맞물 및 송출기류수 이용</td> <td>★★★★</td> </tr> <tr> <td>18. 빗물용 기기 사용</td> <td>★</td> </tr> <tr> <td>19. 물 사용량 모니터링</td> <td>★</td> </tr> </table> <p>라. 생활 환경 등급</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성능항목</th> <th>성능등급</th> </tr> <tr> <td>1. 난기내외 보편적 적용도 조성 및 면적</td> <td>★★★★</td> </tr> <tr> <td>2. 대중교통의 근접성</td> <td>★★</td> </tr> <tr> <td>3. 생활민원시설 및 생활기호도의 적함성</td> <td>★★</td> </tr> <tr> <td>4. 생활민원시설의 접근성</td> <td>★★★★</td> </tr> <tr> <td>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td> <td>★★★★</td> </tr> <tr> <td>6. 운양·송차관리 운사 및 예방용 배포</td> <td>★★★★</td> </tr> <tr> <td>7. 사용자 생활 편의</td> <td>★★★★</td> </tr> <tr> <td>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td> <td>★★★★</td> </tr> <tr> <td>9. 단위세대내의 사회적 약자배려</td> <td>★</td> </tr> <tr> <td>10. 공용공간내 사회적 약자배려</td> <td>★</td> </tr> <tr> <td>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td> <td>★★★★</td> </tr> <tr> <td>12. 세대내 밀로 확보율</td> <td>★</td> </tr> <tr> <td>13. 총대면적의 공용화실수준</td> <td>★</td> </tr> <tr> <td>14. 방화연선 준준도</td> <td>★★</td> </tr> </table> <p>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성능항목</th> <th>성능등급</th> </tr> <tr> <td>1. 감시 및 정보전달</td> <td>★</td> </tr> <tr> <td>2. 제연설비</td> <td>★</td> </tr> <tr> <td>3. 내화성능</td> <td>★</td> </tr> <tr> <td>4. 수평난방기</td> <td>★★</td> </tr> <tr> <td>5. 복도 및 계단 유도노면</td> <td>★</td> </tr> <tr> <td>6. 피난설비</td> <td>★★</td> </tr> </table> <p>「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 11조 및 「주택법」 제 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2년 03월 16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한국부동산원장</p> | 가. 소음 관련 등급 |  | 다. 환경 관련 등급(계속) |  | 1. 방향중적응 차단능력 | ★★★★ | 17. 연계된 녹지축 조성 | - | 2. 중량중적응 차단능력 | ★★ | 18. 파면외곽 녹지축 | ★ | 3. 제1차 간격벽의 차음성능 | ★★★★ | 19. 생활민원물 | ★ | 4. 공동주택으로 밀폐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 | 20. 비오물 조망 | - | 5. 화상열 급배수 소음 | ★ | 21. 엘리베이터 오정동질 저감용 배관의 적용 | ★★★ |  |  | 22. 라면 용기상징 확보 | - |  |  | 23. 라면용기상징 표시 수준 | ★★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1. 내구성 | ★★ | 2. 가연성 | ★ | 3. 수리용이성 권용부분 | ★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 | 2. 과도한 지하채광 시설 | - | 3. 토공사 절실도량 최소화 | -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 | 5. 에너지 절감 | ★★★★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계획 수립 | ★ | 7. 산·생활에너지 사용 | -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 | 9. 고효율 보일러를 위한 축열용량의 사용 금지 | ★ | 10. 생활물처리 재활용(2차) 사용 | ★★★★ | 11. 저탄소 구매의 사용 | ★★ | 12. 친환경소재의 사용 | ★ | 13. 유해물질 차단 소재의 사용 | ★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 | 15. 재활용가능자재의 보편성 설치 | ★★★★ | 16. 고품질 콘크리트 사용 | ★ | 17. 맞물 및 송출기류수 이용 | ★★★★ | 18. 빗물용 기기 사용 | ★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1. 난기내외 보편적 적용도 조성 및 면적 | ★★★★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 | 3. 생활민원시설 및 생활기호도의 적함성 | ★★ | 4. 생활민원시설의 접근성 | ★★★★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 | 6. 운양·송차관리 운사 및 예방용 배포 | ★★★★ | 7. 사용자 생활 편의 | ★★★★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 | 9. 단위세대내의 사회적 약자배려 | ★ | 10. 공용공간내 사회적 약자배려 | ★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 | 12. 세대내 밀로 확보율 | ★ | 13. 총대면적의 공용화실수준 | ★ | 14. 방화연선 준준도 | ★★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1. 감시 및 정보전달 | ★ | 2. 제연설비 | ★ | 3. 내화성능 | ★ | 4. 수평난방기 | ★★ | 5. 복도 및 계단 유도노면 | ★ | 6. 피난설비 | ★★ | <h3 style="margin: 0;">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서</h3> <p>■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lt;개정 2017.1.20&gt;</p> <h4 style="margin: 0;">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h4>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건축물 개요</th> <th>인증 개요</th> </tr> <tr> <td> <b>건축물명 :</b> 대상공원 특례사업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br/> <b>준공연도 :</b> 20220502<br/> <b>주소 :</b>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내동 산 33-1<br/> <b>층수 :</b> 지하2층 / 지상33층<br/> <b>면적 :</b> 358961.8222㎡<br/> <b>건축물의 주택 형태 :</b> 공동주택<br/> <b>실제자 :</b> (주)마루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td> <td> <b>인증번호 :</b> 22-주-에-11-0001<br/> <b>평가자 :</b> 정해관<br/> <b>인증기관 :</b> 한국부동산원<br/> <b>유효기간 :</b> 한국에너지공단<br/> <b>인증명칭 또는 사용명칭 :</b> 정해관         </td> </tr> </table> <p style="text-align: right;">인증 등급 : 1+등급</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colspan="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th> </tr> <tr> <th>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th> <th>요구량</th> <th>등급</th> <th>단위면적당 CO<sub>2</sub> 배출량 (kg/㎡·년)</th> </tr> <tr> <td>에너지 저소비량 건축물</td> <td>58.7</td> <td>1+</td> <td>22.1</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colspan="4">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th> </tr> <tr> <th>구분</th> <th>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th> <th>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th> <th>1차 에너지소비량(kWh/㎡·년)</th> <th>단위면적당 CO<sub>2</sub> 배출량 (kg/㎡·년)</th> </tr> <tr> <td>냉방</td> <td>0.0</td> <td>0.0</td> <td>0.0</td> <td>0.0</td> </tr> <tr> <td>난방</td> <td>15.9</td> <td>36.0</td> <td>28.0</td> <td>7.5</td> </tr> <tr> <td>급탕</td> <td>30.7</td> <td>35.5</td> <td>26.4</td> <td>7.2</td> </tr> <tr> <td>조명</td> <td>12.1</td> <td>11.4</td> <td>21.3</td> <td>5.3</td> </tr> <tr> <td>환기</td> <td></td> <td>4.4</td> <td>12.1</td> <td>2.1</td> </tr> <tr> <td>합계</td> <td>58.7</td> <td>87.4</td> <td>97.8</td> <td>22.1</td> </tr> </table> <p>■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br/>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br/>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소비량에 항목별 제차, 가중, 환산, 공회, 공회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br/>         ■ 단위면적당 CO<sub>2</sub>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p> <p>* 이 건물은 냉방설비(1)   설치된   V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br/>         *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br/>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은 양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p> <p>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 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2년 03월 16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한국부동산원장</p> | 건축물 개요 | 인증 개요 | <b>건축물명 :</b> 대상공원 특례사업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br><b>준공연도 :</b> 20220502<br><b>주소 :</b>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내동 산 33-1<br><b>층수 :</b> 지하2층 / 지상33층<br><b>면적 :</b> 358961.8222㎡<br><b>건축물의 주택 형태 :</b> 공동주택<br><b>실제자 :</b> (주)마루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b>인증번호 :</b> 22-주-에-11-0001<br><b>평가자 :</b> 정해관<br><b>인증기관 :</b> 한국부동산원<br><b>유효기간 :</b> 한국에너지공단<br><b>인증명칭 또는 사용명칭 :</b> 정해관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  |  |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 요구량 | 등급 |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년) |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물 | 58.7 | 1+ | 22.1 |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  |  |  | 구분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 1차 에너지소비량(kWh/㎡·년) |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년) | 냉방 | 0.0 | 0.0 | 0.0 | 0.0 | 난방 | 15.9 | 36.0 | 28.0 | 7.5 | 급탕 | 30.7 | 35.5 | 26.4 | 7.2 | 조명 | 12.1 | 11.4 | 21.3 | 5.3 | 환기 |  | 4.4 | 12.1 | 2.1 | 합계 | 58.7 | 87.4 | 97.8 | 22.1 |
| 건축물 개요   | 인증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건축물 명 :</b> 대상공원 특례사업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br><b>건축주 :</b> (주)대상공원개발사업단<br><b>준공(예정)일 :</b> 2025.07.30.<br><b>주소 :</b>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내동 산33-1번지 외 77필지<br><b>층수 :</b> 지하2층, 지상33층<br><b>건축면적 :</b> 358,961.8222㎡ (평가면적: 356,570.6546㎡)<br><b>건축물 용도 :</b> 공동주택<br><b>실제자 :</b> (주)마루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b>인증번호 :</b> 2022-075<br><b>인증기관 :</b> 한국부동산원<br><b>유효기간 :</b> 2022.03.16. ~ 사용승인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날<br><b>인증등급 :</b> 일반(그린4등급)<br><b>인증기준 :</b> 녹색건축 인증기준<br><b>발급규정 :</b> 국토교통부시 제 2019-764호, 환경부고시 제2019-248호, 인증기준 운영세칙(2020.04.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소음 관련 등급  |   | 다. 환경 관련 등급(계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방향중적응 차단능력  | ★★★★  | 17. 연계된 녹지축 조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중량중적응 차단능력  | ★★  | 18. 파면외곽 녹지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제1차 간격벽의 차음성능   | ★★★★  | 19. 생활민원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공동주택으로 밀폐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   | 20. 비오물 조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화상열 급배수 소음  | ★   | 21. 엘리베이터 오정동질 저감용 배관의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라면 용기상징 확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라면용기상징 표시 수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내구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가연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수리용이성 권용부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과도한 지하채광 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토공사 절실도량 최소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에너지 절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산·생활에너지 사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고효율 보일러를 위한 축열용량의 사용 금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생활물처리 재활용(2차) 사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저탄소 구매의 사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친환경소재의 사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유해물질 차단 소재의 사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재활용가능자재의 보편성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고품질 콘크리트 사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맞물 및 송출기류수 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빗물용 기기 사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난기내외 보편적 적용도 조성 및 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생활민원시설 및 생활기호도의 적함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생활민원시설의 접근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운양·송차관리 운사 및 예방용 배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사용자 생활 편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단위세대내의 사회적 약자배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공용공간내 사회적 약자배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세대내 밀로 확보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총대면적의 공용화실수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방화연선 준준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감시 및 정보전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제연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내화성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수평난방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복도 및 계단 유도노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피난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축물 개요   | 인증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건축물명 :</b> 대상공원 특례사업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br><b>준공연도 :</b> 20220502<br><b>주소 :</b>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내동 산 33-1<br><b>층수 :</b> 지하2층 / 지상33층<br><b>면적 :</b> 358961.8222㎡<br><b>건축물의 주택 형태 :</b> 공동주택<br><b>실제자 :</b> (주)마루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b>인증번호 :</b> 22-주-에-11-0001<br><b>평가자 :</b> 정해관<br><b>인증기관 :</b> 한국부동산원<br><b>유효기간 :</b> 한국에너지공단<br><b>인증명칭 또는 사용명칭 :</b> 정해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 요구량   | 등급                        |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물   | 58.7  | 1+                        | 2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 1차 에너지소비량(kWh/㎡·년)  |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냉방   | 0.0   | 0.0                       | 0.0   | 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난방   | 15.9  | 36.0                      | 28.0  | 7.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급탕   | 30.7  | 35.5                      | 26.4  | 7.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명   | 12.1  | 11.4                      | 21.3  | 5.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환기   |   | 4.4                       | 12.1  | 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58.7  | 87.4                      | 97.8  | 2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함.

|        |              |
|--------|--------------|
| 구 분    | 내진능력(MMI 등급) |
| 내진등급 I | VII-0.239g   |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시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로 조정되었습니다.

■ 분양가격 공시

[단위 : 원]

| 항 목         |            | 공 통          | 금 액             | 항 목         |            | 공 통           | 금 액             | 항 목             |               | 공 통               | 금 액                |                   |                |  |
|-------------|------------|--------------|-----------------|-------------|------------|---------------|-----------------|-----------------|---------------|-------------------|--------------------|-------------------|----------------|--|
| 택지비<br>(4)  |            | 택지공급가격       | 459,022,989,508 | 공사비<br>(51) | 건축<br>(23) | 철근콘크리트 공사     | 83,754,605,600  | 기계<br>설비<br>(9) | 오배수설비공사       | 3,233,595,600     |                    |                   |                |  |
|             |            | 기간이자         | -               |             |            | 용접공사          | -               |                 | 위생기구설비공사      | 5,254,593,100     |                    |                   |                |  |
|             |            | 필요적 경비       | -               |             |            | 조적공사          | 4,967,668,300   |                 | 난방설비공사        | 3,233,595,600     |                    |                   |                |  |
|             |            | 그 밖의 비용      | 7,005,920,492   |             |            | 미장공사          | 16,338,107,800  |                 | 가스설비공사        | 808,399,300       |                    |                   |                |  |
| 공사비<br>(51) | 토목<br>(13) | 토공사          | 9,978,198,100   |             |            | 단열공사          | 2,759,815,900   |                 | 공사비           | 그 밖의<br>공중<br>(4) | 자동제어설비공사           | 1,212,598,100     |                |  |
|             |            | 흙막이공사        | -               |             |            | 방수·방습공사       | 5,563,788,300   |                 |               |                   | 그 밖의<br>공사비<br>(2) | 특수설비공사            | 1,616,797,800  |  |
|             |            | 비탈면보호공사      | -               |             |            | 목공사           | 9,615,197,000   |                 |               |                   |                    | 공조설비공사            | -              |  |
|             |            | 옹벽공사         | 905,142,800     |             |            | 가구공사          | 27,796,862,100  |                 |               |                   |                    | 전기설비공사            | 26,462,564,600 |  |
|             |            | 석축공사         | -               |             |            | 금속공사          | 1,920,831,300   |                 |               |                   |                    | 정보통신공사            | 9,446,010,300  |  |
|             |            | 우·오수공사       | 2,017,168,400   |             |            | 지붕 및 흡통공사     | 1,953,949,700   | 간접비<br>(6)      |               |                   | 소방설비공사             | 17,557,801,100    |                |  |
|             |            | 공동구공사        | -               |             |            | 창호공사          | 13,033,654,700  |                 |               |                   | 승강기공사              | 4,942,762,300     |                |  |
|             |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               |             |            | 유리공사          | 2,509,626,800   |                 |               |                   | 일반관리비              | 19,008,575,800    |                |  |
|             |            | 도로포장공사       | 2,186,735,100   |             |            | 타일공사          | 9,880,139,500   |                 | 이윤            | 26,436,267,200    |                    |                   |                |  |
|             |            | 교통안전 시설물공사   | -               |             |            | 돌공사           | 6,579,399,800   |                 | 설계비           | 4,098,501,644     |                    |                   |                |  |
|             |            | 정화조시설공사      | -               |             |            | 도장공사          | 2,859,168,700   |                 | 감리비           | 8,766,555,383     |                    |                   |                |  |
|             |            | 건축<br>(23)   | 건축<br>(23)      |             |            | 조경공사          | 12,319,099,600  | 도배공사            | 3,400,092,400 | 일반분양시설 경비         | 76,745,514,300     |                   |                |  |
|             |            |              |                 |             |            | 부대시설공사        | -               | 수장공사            | 5,541,709,600 | 분담금 및 부담금         | 31,249,340,000     |                   |                |  |
|             | 공통가설공사     |              |                 |             |            | 4,585,157,700 | 주방용구공사          | 7,992,425,800   | 보상비           | -                 |                    |                   |                |  |
|             | 가시설물공사     |              |                 |             |            | 4,511,194,300 | 잡공사             | 9,184,665,800   | 기타 사업비성 경비    | 60,322,131,020    |                    |                   |                |  |
|             | 지정 및 기초공사  |              |                 |             |            | 5,762,770,500 | 기계<br>설비<br>(9) | 급수설비공사          | 8,083,989,900 | 그밖의 비용(1)         |                    | 24,639,531,153    |                |  |
|             | 철골공사       |              |                 |             |            | -             |                 | 급탕설비공사          | 7,679,790,200 | 합계                |                    | 1,064,745,000,000 |                |  |

■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 항 목        |           | 금 액 | 산출근거                   |
|------------|-----------|-----|------------------------|
| 택지비<br>가산비 | 택지대금 기간이자 | -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불인정 |
|            | 감정평가수수료   | -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불인정 |

|            |                |               |                        |                        |
|------------|----------------|---------------|------------------------|------------------------|
|            | 휴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 7,005,920,492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                        |
|            | 합 계            | 7,005,920,492 |                        |                        |
| 건축비<br>가산비 | 법정초과 복리시설 설치비  | 4,207,979,109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                        |
|            | 법정초과 조경시설 설치비  | -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불인정 |                        |
|            | 저층부 석재마감 공사비   | -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불인정 |                        |
|            | 인텔리전트<br>설비    | 홈네트워크         | 10,742,277,700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
|            |                | 에어컨 냉매배관      | -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불인정 |
|            |                | 기계환기설비        | -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불인정 |
|            | 분양보증수수료        |               | 3,514,583,923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
|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               | 6,174,839,779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전액 인정  |
|            | 지하주차장 층고증가 공사비 |               | -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불인정 |
|            | 합 계            |               | 24,639,680,511         |                        |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 구 분        | 회사명                | 감리금액(부가세 포함)    | 비고 |
|------------|--------------------|-----------------|----|
| 건축감리       | 주식회사 도원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 ₩6,965,122,000원 |    |
| 전기감리       | 유한회사 광진이앤지         | ₩980,261,429원   |    |
| 정보통신·소방 감리 | 현대공영(주)            | ₩800,000,000원   |    |

X 기타 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21.01.25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 시행」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 개시 약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 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일 : 2025년 09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된 잔금은 실입주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암반,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전염병 등)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 될 수 있음.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주택법에 의거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는 견본주택에 열람 가능토록 비치되어 있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됨.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 주요 내용

모든조항은 주택분양보증약관(개정 2021.09.24)을 준용하며, 일부조항은 생략됨.  
 ※ 주택분양보증약관에 따른 보증기관 및 보증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음.

| 보증서번호                    | 보증금액(원)         | 보증기간  |
|--------------------------|-----------------|---|
| 제 01292022-101-0003000 호 | 745,321,500,000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등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도시보증공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

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함.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관리형토지신탁 관련 사항**

본 공급물건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인 (주)대상공원개발사업단,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 및 시공사 현대건설(주) 과 (주)삼정이앤시, 대출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 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함.

-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은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신탁채산을 한도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인 (주)대상공원개발사업단이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함.
-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시행위탁자인 (주)대상공원개발사업단과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 간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되는 경우(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포함), 본 사업상 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시행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시행위탁자인 (주)대상공원개발사업단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에 따라 시행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공급계약서 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시행위탁자인 (주)대상공원개발사업단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됨.
- 본 분양물건은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분양계약자는 시행수탁자인 (주)하나자산신탁을 상대로 준공건축물의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시행위탁자인 (주)대상공원개발사업단과 시공사인 현대건설(주), (주)삼정이앤시 에게 있음.
-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또는 그 밖의 부대사업비와 이와 관련한 PF대출금 상환 등 해당 분양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
- 본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함.
-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표시사항**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업자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br/>(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li> <li>• 사업방식 : 관리형토지신탁</li> <li>•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 완납시 개별등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주택2013-048</li> <li>•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대지소유권 100% 확보</li> <li>• 2021-주택정책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제1호</li> </ul> |
|--|---|

■ 사업관계자 현황

| 구분     | 시행 위탁사                                     | 시행 수탁사                                      | 시공회사1              | 시공회사2                    | 분양대행사                     |
|--------|--|---|--------------------|--------------------------|---------------------------|
| 상호     | (주)대상공원개발사업단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현대건설(주)            | (주)삼정이앤시                 | (주)와이지컴퍼니                 |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159, 405호<br>(용지동,대구은행빌딩)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27, 15층<br>(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 부산광역시 동래구 쇠미로 222-13, 5층 | 대구시 수성구 청수로 24길 59, 2322호 |
| 법인등록번호 | 194211-0309642                             | 110111-1714818                              | 110111-0007909     | 164811-0054233           | 170111-0802034            |

■ 견본주택 안내 및 유의사항

| 견본주택 약도                              | 분양 안내   |
|--------------------------------------|---|
| <p>견본주택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168-1번지</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본주택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168-1번지</li> <li>■ 사업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내동 산33번지 외 77필지</li> <li>■ 홈페이지 : <a href="https://www.hillstate.co.kr/s/#changwon_thefirst">https://www.hillstate.co.kr/s/#changwon_thefirst</a></li> <li>■ 분양문의 : 055-267-1779</li> </ul> <p>※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기재사항의 오류 및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이 우선함.)</p> <p>※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 본 공고와 분양계약서상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분양계약서를 우선 적용함</p> |